

석사학위논문

학교규정 인지교육을 통한 생활적응력
증진 방안 연구

The background features a large, faint watermark of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logo. The logo is circular, with the text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around the top and '제주대학교' around the bottom. In the center is a stylized flame or leaf shape in blue, green, and purple, with a book icon and 'JEJU 1952' below it.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권혁진

2010년 8월

학교규정 인지교육을 통한 생활적응력 증진 방안 연구

지도교수 고 전

권 혁 진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8월

권혁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년 8월

<국문초록>

학교규정 인지교육을 통한 생활적응력 증진 방안 연구

권혁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지도교수 고진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은 교육법규에 의거, 고시한 국가수준의 '기준'임을 명시,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학습자중심 교육과정,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하는 교육과정,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라는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즉, 학습자중심 교육과정은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학생의 역할은 매우 수동적이며,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지도와 지시, 감독을 받고 있는 경향이 강하며 학생 스스로 학교생활에 대해 인지하고 참여하는 학습자 중심적인 내용과 요소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응하는 학습자 중심적인 생활, 즉 학습자가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인지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교육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학교생활이 가능한 분위기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교육의 주체인 학생 스스로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일탈행동을 새로운 학교규정 인지교육 강화를 통해 최소화하고, 사전 예방차원의 자기통제로 학교생활에 익숙하도록 실천함으로써 학교생활적응력을 증진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규정인지 수준 및 현행 체제의 실태 파악을 위해 기초설문을 실시, 설문에서 요구된 학교규정항목에 학생들의 반응 검토 및 분석으로 인지교육수준을 설정하였다. 둘째, 학교규정인지 적용 과정, 학교생활적응력 증진 등의 전략 모색을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학교행사와 연계하여 규정인지교육을 강화하였다. 셋째, 다양한 발문의 학생·교사의 추후 설문으로, 학교규정 인지교육 후 생활의 변화, 학교생활적응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연구에 사용된 변인을 측정하고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넷째, 규정인지교육이 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향상과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대상 외에도 이웃학교 생활지도 담당교사와의 인터뷰로 규정인지 수준, 규정적용 방법 등의 조언을 청취하여 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아울러 학교규정인지가 어려운 현행 체제, 규정위반에 대한 규정적용의 수위, 사전 학교규정인지교육 여부 등 학교규정인지교육 시행의 필요성을 교육정책차원의 개선을 요구하는 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A고등학교의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1·2차 설문을 실시하였고, 서귀포시 6개 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 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할 측정도구는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의 내용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학교규정 인지교육'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특정집단 학생·교사의 인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로, 1차 설문지를 구성, 지도교수의 전문적인 조언과 자문을 통해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최종 제작한 질문지를 학생 및 교사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양호도는 전수조사 후 기술통계를 적용하였다.

1차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학교규정인지교육을 실시하기 이전에 일상에서의 자기성향,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 학교에서의 상황적 특성 등의 내용체계로 설문지를 제작하였으며, 설문 후 연구의 대상인 학생들에게 학교규정인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하였고, 대입·적용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2차 설문지를 제작, 적용하였다.

2차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인지교육을 실시한 이후의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 변화, 학교규정에 대한 기대 성향 등의 내용으로, 설문을 제작,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지역 내의 6개 학교를 방문, 생활지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1·2차·교사의 설문분석을 통해 학교규정인지가 생활적응력 증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끝으로, 본 논문은 무질서, 나태, 해이 등의 기초질서의식이 부족한 학교현장에 학교규정 인지교육을 강화하여 규칙준수의 질서 있는 삶을 정착시킴은 물론 학생 스스로 규정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자제하도록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향상을 꾀하고자 하였다. 사전에 학생의 내적욕구와 규정인지교육이 적절히 부합된다면, 학생은 규정위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자제하게 되어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¹⁾

※ 본 논문은 201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문제	4
3. 용어의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6
1. 인지교육 및 생활적응력의 의미	6
2. 인지교육과 생활적응력의 상관성	13
3. 생활적응력 증진방안에 관한 논의	14
III. 연구방법	27
1. 연구의 대상	27
2. 연구의 도구	27
3. 연구의 설계	32
IV. 연구결과 및 분석	34
1. 학교규정에 관한 인식조사	34
2. 연구결과 분석	36
V. 결론 및 제언	63
1. 요약	63
2. 결론	64
참고문헌	72
Abstract	74
부록	77

< 표 차례 >

<표 II-1> 학교규정 인지교육의 실태(개별적용 측면)	17
<표 II-2> 학교규정 인지교육의 실태(활동관련 측면)	17
<표 II-3> 학교규정 인지교육의 실태(인권관련 측면)	18
<표 II-4> 학교규정 인지교육의 실태(징계관련 측면)	18
<표 II-5> 학교규정 인지교육의 변화	19
<표 II-6> 학교규정의 목적 및 근거	20
<표 II-7> 학교규정의 실제	21
<표 III-1> 1차 설문지의 영역별 문항 구성	28
<표 III-2> 2차 설문지의 영역별 문항 구성	29
<표 III-3> 교사 설문지의 영역별 문항 구성	29
<표 III-4> 학교규정 인지교육의 내용 구성	31
<표 IV-1> 일상생활에서의 자기성향	37
<표 IV-2> 일상생활에서의 자기 성향 분석	37
<표 IV-3>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 영역	40
<표 IV-4>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 분석	41
<표 IV-5> 학교에서의 상황적 특성 인식 영역	44
<표 IV-6> 학교에서의 상황적 특성 인식 분석	45
<표 IV-7>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변화 영역	49
<표 IV-8>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	50
<표 IV-9> 학교규정에 대한 기대성향 영역	52
<표 IV-10> 학교규정에 대한 기대성향 분석	53
<표 IV-11> 일상에서의 자기 성향 영역	55
<표 IV-12> 일상에서의 자기 성향 분석	56
<표 IV-13>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 영역	57
<표 IV-14>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 분석	58
<표 IV-15> 학교에서의 상황적 특성 영역	60
<표 IV-16> 학교에서의 상황적 특성 분석	61

< 그림 차례 >

[그림 1] 학습자중심 교육과정의 모형.....	3
[그림 2] Polya의 문제해결 절차 모형.....	8
[그림 3] Atkinson & Shiffrin의 정보처리 모형.....	8
[그림 4] Atkinson & Shiffrin의 감각기억·단기기억·장기기억의 비교 모형.....	9
[그림 5] Atkinson & Shiffrin의 이론을 적용한 학교교육 인지교육 모형.....	30
[그림 6] 학교규정에 대한 필요성과 인지실태(학생).....	42
[그림 7] 학교규정인지 미흡으로 인한 규정위반.....	46
[그림 8] 학교규정에 대한 인지와 준수여부.....	51
[그림 9] 학교규정에 대한 기대성향 분석.....	53
[그림 10] 학생지도에 따른 스트레스(교사).....	56
[그림 11] 학교규정과 조직체계에 대한 인식(교사).....	58
[그림 12] 학생들이 규정인지 미흡으로 인한 규정위반(교사).....	6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 기술의 변화, 문화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에 의해 서도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시대의 요구는 대체적으로 다른 일반분야에 비해 늦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으나 교육분야에서도 교육과정을 통해 점차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수업, 자기 주도적 학습 등 학생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학생은 더 이상 피교육자가 아닌 적극적인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의 주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은 교육법규에 의거하여 고시한 국가 수준의 ‘기준’임을 명시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학습자중심 교육과정,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하는 교육과정,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라는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렇게 학습자중심의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 실제 생활과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중심 교육과정과 학습자의 인격존중, 자율적 인간을 강조하며 자아 실현인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모든 교육과정은 어느 정도 학습자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어떤 교육과정이든지 교육의 대상인 학습자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민용성, 2003).

그런데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생의 역할을 살펴보면, 매우 수동적이고,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교사의 지도와 지시, 감독만을 받고 있는 경향이 짙다. 학생이 스스로 학교문화에 참여하는 학습자 중심적인 내용과 요소와는 거리가 멀고, 주체적인 역할도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응하는 학습자 중심적인 생활, 즉 학교의 전반적인 내용에 자율적 참여, 교육의 주체로서 능동적 참여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학교생활적응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학교환경의 적응은, 효율적 학습참여·교우관계·학교규정의 준수·개발활동·정서함양·건강증진·진로상담 등 자신의 예상한 생활 속에서 신념과 의지, 도전과 좌절 등의 자각적 경험을 비롯한다. 그 밖의 사교성, 이타성, 개방성 등의 단순 생활적응에서부터 자아존중감, 일탈통제력 등의 심미적 정서 차원의 생활적응도 있다. 이렇듯 다양한 학교문화를 접하다보니 때로는 학생들의 부적응행동도 나타나는데, 교사의 업무과중 등으로 형식적, 사무적인 대응조치가 있을 뿐, 중전의 학생에 대한 이해와 배려, 교육적 의지와 보살핌 같은 관심마저도 점점 수그러들고 있음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생활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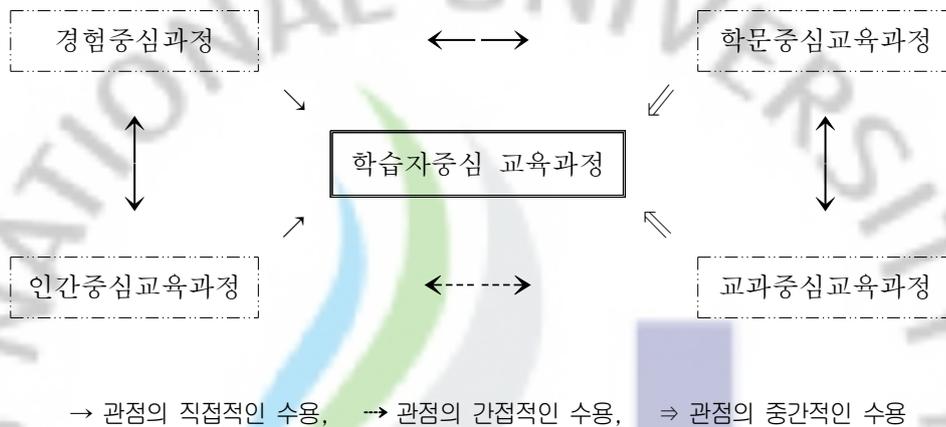
Nicholls and Nicholls(1978)은 교육과정 개발에서 상황분석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학교가 주위환경, 특히 학습자의 요구에 보다 잘 대처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상황분석으로부터 표출된 지식과 통찰을 활용하여 전체적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을 진단, 분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Taba(1962)는 학습자의 요구진단으로부터 교육과정이 개발되는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학습자의 요구나 필요 등을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교육목표를 추출하는 과학적 접근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학교규정의 실태 및 현행 체제의 문제점과 규정위반 사항에 대해서 학생들의 요구나 필요 등의 기초조사 후, '학교규정 인지교육'에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규정운영으로 학교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Mckay와 Fanning(1987), Burns(1993)는 건강하지 못한 인지적 왜곡으로 지나친 일반화, 단정적으로 명명하기, 색안경 끼고 보기, 양극적인 사고, 자기 비난하기, 속단하기, 통제오류, 당위적으로 사고하기, 감정적으로 판단하기, 그리고 낮은 인내성을 들었다. 학교규정은 학교생활에서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심 철학이다. 그러나 그 원칙을 벗어나면 그에 따른 처벌은 아주 엄격하고 예외가 없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학교는 최대한의 의무를 규정해서 실천하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이고, 그러기에 규정위반의 경우도 교사의 속단, 단정적 사고, 임의적 규정적용 등 자의적인 잣대로 처벌하는 양상을 많이 띠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전 '학교규정 인지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해당학

교에도 그 책임소지가 다분하며, 규정을 알지 못하여 실책하게 된 학생에게만 책임전가는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민용성(2003)은 학습자중심 교육과정을 기존의 경험중심 교육과정과 인간중심 교육과정, 그리고 학문중심 교육과정 등의 관점을 수용하면서도 현대의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시하며, 학습자의 자율과 인격적 측면을 더욱 강조하는 교육과정이라 하였다[그림 1].



[그림 1] 학습자중심 교육과정의 모형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학습자중심 교육과정의 개념과 의의에 입각한 학교규정실태 조사와 학교규정 준거를 기반으로 학습자의 요구에 적합하면서도, 학교의 상황에 부합되는 학교규정인지교육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학교규정 인지교육 실시와 동시에 학생·교사의 역할을 살피고, 학교규정적용 및 운영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학교현장에 산재된 교육과제의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은 교육적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학교규정을 자세히 인지시키지 못하는 학교의 현행 체제와 현안과제인 ‘학교규정인지교육의 전무’라는 현행 체제에 대한 성찰과 함께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교육정책 차원에서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싶다. 따라서 학교규정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갈등해결을 위한 교육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의 내적욕구와 학교규정인지교육이 적절히 부합된다면, 학생 역시 어떤 행동에 앞서 규정

위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자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적받거나 꾸중들을 행동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학교생활에 당당한 자신감과 정신적 여유를 갖게 됨으로써 학교생활적응력이 높아질 것이다.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는 '학교규정인지 효과'와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에 대해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목적으로 '학교규정인지교육'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학생들이 느끼는 인지수준, 학교에서의 규정적용 여부 등 실제 파악에서 나타난 현상을 분석하여, 학교현장에서의 학교규정 인지교육 강화 시 실행 효과 및 새로운 변화, 학교생활적응력 향상과의 상관성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규정인지가 규정준수 행동의지에 효과가 있는가?

둘째, 학교규정인지 효과로 인해 학교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인가?

셋째, 학교규정인지를 강화하면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

3. 용어의 정의

가. 학교규정(school regulations)

학생교육법규로,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 제18조, 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등을 그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으나 이는 일반법에 그치고, 학교규정에 관한 실재는 학교행정, 학적운영, 학업성적관리 등이 포함되나, 여기서는 학생생활규정, 선도규정, 체벌규정, 그린 마일리지제 등 학생생활지도과정의 제반규정으로 제약한다. 이는 학교단위의 개별입법에 의하여 즉시강제의 각 단행법으로 존재하고 있어 시도 학교 전체가 체계적 통합성과 법적 명확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나. 인지교육(cognition education)

인지(cognition)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아는 것으로, 사고의 실제과정 중 인지과정상의 이해와 학업상의 인지영역을 말하며, 인지적 사고력은 지식의 발견, 재발견과 관련된 능력으로 암기력, 기억력, 학업성취도 이상의 높고 넓으며, 유동적이고, 자신의 의지와 환경의 조건에 따라 변화한다. 지능이나 생활연령, 교육받은 경험, 성취수준에 따라 인지발달, 학습부진, 주의산만, 과잉행동, 학습장애, 발달장애를 동반한다.

교육환경에서 제시한 전략적 인지모델의 명시적, 반복적 강조는 생활적응에 규칙의 제공 및 자신의 자기규제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상위인지 전략의 언어, 논리, 집단 정서, 사회성 영역 등은 사회적인 신념을 재확인하며, 행동규범의 강화, 사회통합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인지전략 모델링은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인식, 계획, 모니터링이 정확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한 인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인지교육을 통해 문제해결 촉진과 자아성장 효과를 깨달게 되고, 인식이 고무될 수 있기 때문에 인지내용의 접근 가능성 및 적용범위 등에 따라 그 영향을 넓힐 수 있다.

다. 생활적응력(School-related adjustment)

일반적인 적응인자로, 학교환경 내에서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학업적 사항에서의 효율적인 학습, 또래집단 간의 교우관계, 건강증진, 진로상담 등 자신에게 예상되는 생활사건을 체계적이고 전문화되게 구축하는 습관적 행동으로, 정의적 측면에서 정서적 스트레스를 '자신에 대한 도전이며,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는 긍정적 인식 하에 자기욕구를 발산하며, 합리적 해결로 만족감을 느껴 교사·학생들과의 관계도 조화롭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또한 자신의 장점 발견 및 적성을 극대화시켜 적응하는 힘을 말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인지교육 및 생활적응력의 의의

가. 인지교육의 의의

일반적으로 사회적 체제는 크게 구성원의 역할, 규범, 그리고 가치의 세 가지 유형에서 비롯되어진다(Katz & Kahn, 1978). 조직구성원은 각자의 지위에 따른 역할정의 또는 역할기대에 따라 행동하며 규범과 가치는 조직구성원의 과업수행 행위를 조정하고 정당화해주는 이념적 기초를 마련해 준다. 규범은 교육체제에 넓게 산재하여 교육효과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교사회의 사회심리적 기제(mechanism)에 따라 학생은 학교 내의 집단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면서 앞에서 제시한 학구적 규범, 학교의 조직 특성 그리고 수업실천 행위 특성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파급되어 갖가지의 행동유형 즉 역할, 규범, 가치 등을 배우며 이것은 또 교사와 행정가의 대인기대 평가체제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학급 내 상호작용 및 수업행위에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학교 간 학습성취의 차이를 초래하게 된다.

나. 인간의 문제해결 과정과 정보처리 이론

인지(cognition)란 감각과 지각을 제외한 인간의 모든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정신과정을 의미한다. 인지에 중점을 두는 심리학의 한 분야인 인지심리학이란 외부 환경으로부터 들어온 자극 즉, 감각정보가 입력되고 변형, 축소(상실), 정교화, 저장, 인출, 활용되는 모든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지심리학의 연구 범위에는 기억, 사고, 이해, 추론, 판단, 문제해결 등의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이 포함된다.

인간의 정신적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인지심리학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접근법은 ‘정보처리 접근법’이다. 이것은 흔히 「정보처리 이론」이라고 알려져 있다. 정보처리 이론에서는 인간의 인지체계 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사건들을, 컴퓨터에 정보가 입력, 저장, 변형 및 인출되는 원리에 비유하여 설명한 것이다.

1) 인간의 문제해결 과정

인간의 IPS(information processing system)의 특징 중 소수의 특징만이 과제나 문제해결자에 따라서 불변한다고 보는 견해이다(Newell & Simon, 1972). 이 특성들은 IPS안에 과제 환경이 문제 영역으로 제시되고, 문제해결은 문제해결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결정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제 환경의 구조가 문제영역의 가능한 구조를 결정하며, 문제영역의 구조가 문제해결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가능한 프로그램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2) 정보처리 이론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초반 여러 심리학자들은 학습과 그 밖의 심리적 과정을 연구함에 있어 의사소통의 기술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정보처리 이론은 컴퓨터의 정보처리 과정과 인간의 사고과정이 유사하다는 전제하에 뇌에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표상하거나 부호화하고,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정보를 불러내거나 상기하는 기억의 구조와 과정을 탐구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학습에 적용된 정보처리이론은 학습자의 내부에서 학습이 발생하는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킨슈(Kintsch, 1970)는 인간이 정보를 획득하고 보유하는 방법, 자신이 배울 것의 내용과 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인간학습을 서술하고 있다. 그는 인간을 정보를 처리하는 존재로 개념화하면서, 학습의 개념을 논했다. 사이먼과 뉴웰은 외부 환경과 정보처리조직의 특성과 한계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하는 적응 유기체가 인간이라고 본다. 인간은 변화하는 환경의 요구 하에서 목표를 추구하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

정보처리이론은 뉴웰(Newell)과 사이먼(Simon)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간과

는 서류철이나, 주소록 등으로 비유될 수 있다. 감각등록기관 이러한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감각적 유입과정을 거쳐 감각수용기에 극히 짧은 시간동안 저장하는 기억으로, '감각기억'이라고 한다. 이때 환경적 자극은 매우 정확하게 저장되며 기억용량은 무제한이지만, 그 시간은 매우 짧아서 시각정보는 영상으로 약 1초동안 저장되며, 청각정보는 잔향으로 기억되면 약 4초간 기억된다. 투입된 정보가 즉시 처리되지 않으면 정보는 즉각 유실되고 만다[그림 3].

그리고 감각기억은 물리적 자극이 사라진 다음에도 짧은 시간동안 비교적 처리되기 전의 원형(relatedly raw, unprocessed form) 자극의 정보를 유지하며, 감각기억의 정보 중 일부는 단기기억으로 전이되어 추가처리 되나 다른 것은 상실되고 새로운 투입이 대치된다. 감각기관들은 병렬적 기능으로 몇 개의 감각기관들이 동시에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때 지각과 주의과정이 감각기억에서의 정보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 4] Atkinson & Shiffrin의 감각기억 · 단기기억 · 장기기억의 비교 모형

그리고 작동기억은 흔히 '단기기억'이라 하는데 간단한 암산과 같은 정신작용이 일어나며, 단기간의 저장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기기억은 기억체계 안의 정보의 흐름을 지배하는 기능을 한다. 성인의 경우 보통 5~9(7±2법칙)개의 정보가 대략 20초 동안 저장된다. 이처럼 정보의 양과 지속시간이 제한되므로 청킹(chunking)의 활용을 통해 작동기억의 수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분리되어 있는 항목들을 보다 큰 묶음으로, 보다 의미 있는 단위로 조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l,o,v,e' 라는 네 철자를 'love'로 조합하는 경우이다.

즉, ‘l, o, v, e’ 라는 네 철자는 작동기억 속에 네 개의 단위로 자리하지만, ‘love’는 하나의 단위로 자리하는 것이다. 단기기억의 정보는 반복적 학습을 통해 망각을 방지할 수 있다. 정보가 단기기억에 있는 동안 부분적으로 장기기억에 보관되어 장기기억고에 보관된다.

‘장기기억’은 짧게는 수 분간, 길게는 수십 년간 저장되는데 용량은 무제한이며, ‘일상기억’과 ‘의미기억’으로 구성된다. 일상기억은 주로 개인적 경험의 저장소로, 정보발생의 시점과 장소를 기초로 조직되며, 정보는 주로 이미지로 부호화되나 보다 최근에 발생한 정보로 인해 기억의 방해를 받으므로 매우 의미있는 경험이 아니면 인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의미기억은 사실, 개념, 규칙, 사고기술, 문제해결전략 등과 같이 경험으로 습득한 일반화 요소, 즉 대부분의 학습내용이 의미기억에 저장된다. 의미기억에 저장되는 내용들은 서로 연계되어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이는 장기기억 속의 정보들이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기보다는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연결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학습자가 정보를 수동적이 아닌 정보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조직한다는 것이다.

3) 정보처리이론의 학습의 과정

정보처리이론의 학습의 과정에서, ‘자극에의 주의’는 선택된 물리적 자극을 확인하는 ‘형태재인(pattern recognition)’과 자극의 특유한 측면들을 분석하여 선택·처리하는 ‘측면분석(feature analysis)’으로 나뉘는데 측면분석을 통한 형태재인이 이루어지려면 ‘자료주도적 처리’와 ‘개념주도적 처리’의 두 가지 과정이 있어야 한다.

자료주도적 처리는 정보입력과 동시에 식별이 되며, 투입된 장소 쪽에서 구조를 발견하는 것이며, 개념주도적 처리에서는 고차적 지식이 저차적인 개별정보의 해석에 기여한다는 것으로 동기·목표·맥락에 의해 유도될 수 있다.

‘주의’는 익숙하고 친밀한 패턴의 인식인 경우 자동적으로 처리되며, 서투르고 낯선 패턴의 인식인 경우는 심사숙고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장기기억에 저장하기 위해 ‘자극의 부호화’가 필요하며, 정보의 조직이 잘된 것은 학습이 용이하고 기억이 쉽다. 여기에는 위계를 사용하는 방법과 기억술을 이용하는 ‘조직화’가 있

으며, 새로운 정보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에 관련시켜 기억하려는 정보 확대의 과정인 '정교화'가 있는데 '유지시연'과 '정교화 시연'으로 나뉜다. '유지시연'은 정보기억을 위한 단순 반복활동으로 주소의 반복암송 등이 예이다. '정교화 시연'은 정보를 특정방식으로 변형하는 것으로, 정보가 기존정보와 관련되도록 구체화, 다른 상징으로의 정보대체, 회상을 위해 추가정보의 보충 등이다. 예를 들어 wing이라는 단어학습 시 바람(wind)과 연관시켜 익히는 것이다.

다. 생활적응력의 의미

학교적응은 학생이 자신에 대한 주체의식을 바탕으로 교우,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학업을 수행하고 학교의 규범에 적절한 행위를 하며 만족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오수연, 1999),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이란 본질적으로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환경의 요구도 충족시켜 주는 능력을 말한다. 즉 주어진 학교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학생들의 투쟁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 학생들은 '주변환경과의 조화있는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기능적이거나 혹은 학습된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김인자, 1984).

실제로 적응은 두 가지 종류의 과정 중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과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Lazarus, 1976). 즉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자신을 환경에 내맡기기 보다는 환경을 최대한도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훌륭한 적응이란 환경과의 수동적인 관계이상의 것을 의미하며 학생개인과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관계(two-way relationship)인 것이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협동적이며 정직하고 관용성이 있어 당면하는 모든 학습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학교에서의 적응이 잘 되어있다고 하겠다. 또한 충족되어야 할 요구 또는 동기가 저지되고 목표 지향적 행동이 차단된 욕구좌절 상태에 봉착했을 때 욕구좌절의 원인을 통찰하여 욕구나 목표를 현실적으로 수정하거나 외적 지원을 얻거나 우회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욕구나 목표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적응된 행동이다(허철수, 1998).

1) 학교생활적응력의 필요성

학교라는 환경과 제도 안에서 학생의 심리사회적 기능과 학업성취 능력의 향상은 물론,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 욕구를 가진 구성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개인적 욕구를 충족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지해 줄 필요가 있다. 이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 학교에 대한 사회인식도 변화되고 있는데, 교사의 지도에 잘 응하고 학습에 충실해왔던 전통적 학교의 관점에서 벗어나, 학생·교사가 활발히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체계이자 제도로 인식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학교는 상호작용하면서 교육적 욕구를 다루는 곳으로, 그 기능을 위해서는 학교구성원 간의 학교제도나 규정의 합리적 운영으로 훗날 사회적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이 바로 교사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비행, 문제행동과 학교부적응 양상이 점차 저연령화 되는 경향(김정희, 1996)이 있는데, 이미 초등학교 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사회문제시 되고 있다. 이는 입시중심 교육, 인간경시의 사회풍조와 공교육 부실에서 비롯된 청소년들의 불안과 학교폭력, 가정기능의 약화 등 청소년 시기의 사안들이 점차 저연령화,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의 비행 및 연령은 완고함, 거짓말, 절도, 불복종, 흡연 등 평균 9.5세(초등학교 3,4학년)이며, 가출의 평균연령은 12.8세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부적응은 사회문제로 점차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며, 초등학교의 비행 및 범죄행위에 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물파손, 절도행위가 약 21%, 폭행, 패싸움이 약 19%, 흡연, 음주경험이 약 26% 정도에 달한다.

이렇듯, 학생들은 경쟁위주의 교육으로 심성이 거칠어져, 동료의식, 배려심의 기대는 어려운 현실이고, 특히 일부 교사들은 ‘학생생활교육은 교과교육에 밀려 뒷전이고, 기본적인 생활습관지도 역시 학생들의 기본의식 결여와 반항으로 인하여 생활지도에는 자신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욱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의 해결은 주로 사안 후 개별상담에 치중하는 경우가 흔하다. 폭행, 성범죄, 절도 등의 비행은 위기 전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데, 여러 가

지 사안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개입방법은 적극적인 예방이다. 위험성이 있는 사안을 조기 발견으로 도움을 주고, 환경에 잘 적응토록 적응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은 주로 학교에서 또래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안에서 대인관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잘 적응토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여러 가지 사안예방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으로 학생·부모·교사가 연계한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학교규정 인지교육이 실시는 사안예방의 일환이자 학교규정 본래의 역할 회복과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평소 인지교육의 의무적 시행과 일상화로 미래의 예측 가능한 위반행동을 미연에 예방하고, 학교생활에 규칙성과 안정감을 주어 생활적응력 향상이 되도록 실천이 필요하다.

2) 학교생활적응력의 향상

생활적응의 성패는 생활사건이나 환경의 변화, 그 자체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비춰진 현상이 스트레스로 여겨지는지 여부가 중요한 인자라고 볼 수 있다.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스트레스가 자신에 대한 도전이자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을 평소에 인식하며, 자신에게 일어날 생활사건을 미리 예견해서 대비하는 습관을 들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적성 발견으로 극대화 기회를 갖고, 자신의 장점과 긍정적인 부분을 재조명해서 자존심을 증진시켜줄 필요가 있으며, 학습 및 인지기술(academic & cognitive skill), 대인관계 기술(interpersonal skill), 자기조절기술(self-controlling skill), 문제해결기술(problem solving skill), 의사결정기술(decision-making skill), 의사소통기술(communication skill)외에도 일상적 행동, 정서적 반응, 문제해결, 대화방법 등이 있다.

2. 인지교육과 생활적응력의 상관성

가. 인지와 행동변화

우리는 가끔 원치 않은 상황(예: 가정환경, 사회적 상황, 실패, 상실, 배신 등)에 처할 수 있고 그 때 부적응 정서(예: 실의, 낙담, 좌절, 우울 등)나 부적응 행동(예: 방황, 자살, 공격적 행동 등)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부적응 정서나 부적응 행동의 선행자극으로 생각되는 원치 않은 상황을 미리서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김기정, 2002).

인지치료 이론가들은 부적응 정서나 부적응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을 개인의 내부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으로 보고,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데 치료의 초점을 둔다(박경애, 1997). 따라서 부적응 행동의 선행조건은 원치 않은 상황이나 사건이 아니라 개인이 지니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들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신념을 바꾸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도 자극통제법의 하나가 된다. 원치 않은 상황이나 사건에 대하여 개인이 지니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들이 부적응 정서나 부적응 행동을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다양한 학습전략에 의해 이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김기정, 2002).

나. 인지교육(선행조건)과 행동변화

대부분의 행동은 선행조건에 영향을 받게 된다.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선행조건을 변별자극(discriminative stimuli) 또는 단서(cue)라고 한다. 어떤 행동이 이런 변별자극이 제시될 때만 강화를 받는다면 그 행동은 변별자극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말하게 된다. 어떤 단서들은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려준다.

학습자는 그 단서로부터 피함으로써 불안이 줄어들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야단을 칠 것 같은 표정이나 제스처(단서)를 보일 때 어린이가 공부를 시작함으로써 야단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이다. 이 때 어린이가 보인 학습행동은 혐오자극(야단)을 피하기 위한 회피행동(avoidance behavior)이다. 이 회피행동은 소거에 대한 저항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신호를 적절히 이용하면 원하는 행동으로 이끌 수 있다.

불쾌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신호가 주어지면 회피행동이 일어나기 쉽다. 어떤 선행자극이 강화받는 어떤 행동과 일관성 있게 연합되면, 그 행동은 자극통

제(stimulus control)상태에 있다고 말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학생이 지각단속(선행자극)이 있을 때마다 통학시간을 앞당겨 등교함으로써(행동) 규정위반을 예방하고 단속에서 벗어나게 된다면(강화), 그 학생의 등교행동은 지각단속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말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선행자극과 행동이 연합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어떤 경험에 의해 선행자극이 자동적으로 어떤 반응을 유발시키는 경우이다. 즉, 수동적 조건화(respondent conditioning)에 의해 어떤 자극과 어떤 행동이 자동적으로 연합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등교할 때마다 위반행위를 지적받게 된다면 그 학생은 학교규정에 대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자동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 학생에게 학교규정과 유쾌한 경험(상점제)을 반복해서 짝을 지우면 학교규정에 대해 긍정적 정서를 갖게 할 수 있다. 즉 수동적 조건화를 이용하여 재학습을 시키게 되면, 어떤 대상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정서로 변화시킬 수 있다.

수동적 조건화에 의해 선행자극(조건자극)이 자동화된 반응(정서적 반응)을 유발시킨다. 선행자극(비합리적인 신념, 부정적인 자기언어, 물리적 상황, 사회적 상황 등)을 다른 자극(합리적 신념, 긍정적인 자기언어, 물리적 상황, 사회적 상황 등)으로 대치시킴으로써 원치 않은 반응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사람은 실수를 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스스로에게 “너는 언제든 변화할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자기언어의 대치로 긴장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Goldfried(1979)는 보다 적응적인 정서적 반응을 생성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자기진술을 재구성하는 전략을 발전시킨 바 있다.

이렇듯, 생활적응은 제반규정을 하나씩 익혀나가면서 적재적소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자신을 변화시켜 교육환경에 친숙히 적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 예방 차원의 규정인지는 앞서 설명한 바 있는 학습 및 인지기술(academic & cognitive skill)의 형태로서, 각종 사안·위반행위의 현저한 감소 및 학교생활적응력을 높이고 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및 사안지도에 따른 시간소요가 경감될 것이다.

학교의 사회적 체제를 규정짓는 가치나 규범적 특성은 집합적 의미로 볼 때 해당학교의 사회 심리적 특성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학교의 사회 심리적 특성으로는 학교의 사회·심리적 규범(the ideology of school), 학교조직구조(the organization of school), 수업실천 행위(the instructional practices)의 세 가지

요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Gilson과 Mitchell(1981)은 현대사회의 인간기능 중 인간이 집단을 찾는 이유로, 1) 집단 지향적 2) 지식과 정신적 성장욕구, 개인·사회적 욕구를 집단 내에서 충족 3) 집단이 개인의 성장, 학습, 행동형태의 발달, 적응방법, 가치관, 진로, 적응하는 방법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하였다.

특정한 제도의 관심과 목표는 시간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비슷한 청소년의 행동에 대해 다른 반응을 나타내게 되며 더 나아가 그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정책들은 집단의식과 그 조직 내에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개인적인 가치들에 의해 조절된다.²⁾

먼저 학교의 사회·심리적 규범은 학교의 사회적 체제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주로 학교구성원의 학교교육 효과에 대한 일반적 신념, 기대, 규범, 평가, 감정, 분위기 등으로 이러한 학교특성은 학교의 역사적 전통 등에서 파생됨을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학생모두가 잘 배울 수 있고 교사가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신념과 기대 그리고 그에 따른 역할수행은 효과적인 학습결과를 낳는 데 주요한 학습환경의 특성으로 간주된다. 학교구성원의 이러한 신념, 학구적 규범 그리고 상호기대 및 평가는 전체적으로 학교의 문화적 풍토를 형성하게 된다. 이 문화적 풍토는 학교구성원의 사회·심리적 관계구조의 총체이며, 학습효과의 성패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허철수,1998).

3. 생활적응력 증진방안에 관한 논의

가. 학교규정 인지교육의 실태 및 개선

1) 학교규정 인지교육의 실태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규정 인지부족으로 인하여 신입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생활지도의 문제는 다양하고도 빈번하다. 예를 들어, 중학교 3개년 동안의 규정

2) Brenda S. Griffin and Charles T. Griffin, op. cit., pp.27~28.

을 적용받다가, 상급학교인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그 학교의 규정적용으로 학생들은 낯설고 당황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일부 학교규정의 내용이 중학교 때와 유사하지만 고등학교 규정 나름의 고유전통이나 학습환경, 두발, 교복의 형태 등 특색적, 세부적인 내용의 추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색다른 경향의 정서 및 이해관계로 이들 학교 간 구체적인 규정적용도 조금씩 다르거나 생소하여 당황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규정인지를 못한 것이 원인이라 하겠다. 그리고 학년 초에는 경미한 규정위반인 경우도 선도규정이라는 결정적 처방으로 적용되거나 과거처럼 훈계 및 온정적인 지도가 아니라 '법에 준거한 원칙적인 학칙준수 이행'을 강요받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학교규정인지를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되 처벌보다는 예방차원에 초점이 있음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으며, 학교구성원 모두가 학교규정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이 이뤄져야 하겠다.

<표 II-1> 학교규정 인지교육의 실태(개별적용 측면)

연번	규정적용	중점사항 및 내용(개별적용)
1	두발·용의	두발(길이, 염색), 용의(화장, 액세서리, 교복길이·변형, 신발색상, 양말, 가방색상) 등 집중 단속
2	소지품 검사	특별 경우만 소지품 검사, 수시 검사(휴대폰, MP3, 소설, 만화잡지, 담배 등) 가능
3	휴대폰 소지	휴대폰소지 규정으로 일과 및 수업시간 소지 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 지도 교사에 따라서 규제 판단

<표 II-2> 학교규정 인지교육의 실태(활동관련 측면)

연번	규정적용	중점사항 및 내용(활동관련)
4	각종행사 참여	학생이 자유선택 참여 유도, 특별사정이 없는 한 참여 원칙, 불참 시 사유 요구, 반강제적이거나 부모가 참여 강제
5	학생회 운영	학생회 활동에 지도교사, 교장의 허가, 학생회 활동참여 시 제약
6	학교운영 참여	학생회나 다른 기구를 통해 학교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예산, 학칙 제·개정 등)을 내지만 반영 미흡
7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은 충분히 보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의 지원 부족, 비교육 동아리는 불허, 폐쇄.

<표 II-3> 학교규정 인지교육의 실태(인권관련 측면)

연번	규정적용	중점사항 및 내용(인권관련)
8	학생 인권보장	학교운영, 교육환경 등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나 일부 인권침해소지 다분
9	심리적 특징	학생회 임원의 자격제한(학업성적, 성별, 외모 등), 언어적 폭력(모욕, 비하 등) 등 차별
10	신체적 특징	교사의 체벌, 학생들에 의한 괴롭힘, 폭력, 따돌림, 학년별 독서실, 급식실 등의 시설이용 제약

<표 II-4> 학교규정 인지교육의 실태(징계관련 측면)

연번	규정적용	중점사항 및 내용(징계관련)
11	학교규정	현재 규정이 별다른 변화는 없으면서도 단속과 처벌이 약화되는 추세.
12	상벌점제	상벌점제가 있든 없든 큰 차이 없을 것 같으나 상벌점제로 학교생활에 더 많은 통제
13	징계사유	지각이나 결석, 두발, 복장 위반은 약식 적용(교내봉사), 교내폭력, 음주 흡연, 교사지도 불응, 저항은 징계(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강제전학 등)

2) 학교규정 인지교육의 개선점

기존의 학교규정 인지교육의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학교들은 학교규정 인지교육을 신입생 입학 시 대표학생 선서 및 학교장의 입학허가 선언과정에서 "학교규정을 준수하고" 라는 짧은 대목으로 제반 학교규정이 공포된 것처럼 간주된다. 그것은 교사 인터뷰(부록 참조)에서도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규정 인지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학교규정 인지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학생들이 학교규정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공개된 규정을 접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평소 외향적이고 활달한 학생들이 규정위반을 하더라도 자신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그런 행위가 규정에 위반되는지 이해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일정기간 게시판에 학교규정을 부착하여 사전숙지가 되도록 공개한다.

셋째, 규정위반 시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반항하는 경우이다. 이는 충분한 규정인지를 못한 것이 그 원인이며, 사안발생 후 학생들에게 일방적 규정

통보에 앞서 부정적 사고로 수렴하지 않도록 사전에 학교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제시하여 일상적인 실천이 강구되도록 한다.

넷째, 규정인지교육을 반복 실시하여 인지여부 및 변화를 살피되, 학교규정의 허술하거나 대부분의 학생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규정은 시대의 흐름에 알맞게 검토수정 보완하여 변화를 추이해 볼 필요가 있다.

<표 II-5> 학교규정 인지교육의 변화

구분 번호	기존규정의 중점 사항	Check		시대적 변화추이
		유지	변화	
1	소지품, 휴대폰 검사	()	(0)	소지품 검사보다 휴대폰을 더 심하게 규제
2	징계의 증감	()	(0)	징계보다는 상담위주로 감소 추세
3	학생인권 관련	()	(0)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육적인 변화
4	학생규정과 면학	(0)	(0)	두발·용의 규제, 체벌보다는 입시경쟁, 교육정책이 우선
5	학생회/동아리활동	(0)	(0)	다양한 분야의 활동 전개 및 학생자치권 변화
6	학교인식의 변화	()	(0)	학교경영자의 마인드, 삶의 질 개선으로 학교인식 변화
7	학교제도의 변화	()	(0)	상벌점제 도입, 학교예산, 시설지원 체제 등 학교제도 변화

나. 학교규정의 실태

학생들은 교사의 지시에 의한 통제 및 교칙에 준한 생활, 즉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자주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가정에서는 부모에 대한 순종과 학교에서는 스승에 대한 존경이 일방적으로 강요되어 온 기성의 문화에서 청소년에 대한 권리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이다(김준수, 2004).

그리고 학교규정의 경우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학생사안, 문제행위, 불손한 태도 등에 대한 대응조치 및 징계를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학교규정이 적용된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는 지도보다는 그 때마다의 상황에 따른 지도의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으며, 교사에 따라서는 반성문 대처하거나 ‘용통성의 발휘’라는 너스레로 규정의 엄정 적용을 회피하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지도받은 경험이 있는 극히 일부의 학생에게만 규정이 파급될 뿐 대부분

의 학교구성원은 그리 관여하지 않는 경향이 짝다. 이렇듯 실수요자인 학생들에게 학교규정의 파급이 더디고 이행이 어렵다. 그것은 규정준수를 통한 법과 원칙에 의해 공정성과 중립적 형평성에 준하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교규정이 일상의 용도로는 별로 필요치 않을 것이라는 안이함과 무관심, 교육적 효과를 위한 예방차원보다는 그저 '큰 문제없는 학교' 유지에만 그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학교규정이 모든 학생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만을 토로하며 항의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렇듯 학교규정에 대해 교사·학생 간의 신뢰 형성이 어려운 것은, 그 시행에 있어서 전반적인 규정이 지속·일관된 적용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국소적 해결책을 적용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다.

1) 학교규정의 목적 및 근거

000고등학교 학칙에 나타난 학교규정의 목적 및 적용근거는 다음과 같다.

<표 II-6> 학교규정의 목적 및 근거

구분	총칙의 내용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 학칙규정의 실제

학교규정을 학생생활, 선도, 학생회, 제·개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7> 학교규정의 실제

구분		항목 및 내용	구분	항목 및 내용		
학생 생활	교내 생활	기본품행	학생회	회원		
		시설이용 및 환경		권리와 의무		
		타인 소유물 존중		금지활동		
		교우관계		지원기구		
		폭력예방		기능		
		용의복장		부서		
		동아리활동		임원		
		출결상황관리		임원의 임무		
		기타 교내생활		임원의 임기		
		학급 내 봉사활동		임원자격 및 선출		
	교외 생활	여기활동		선거 관리		
		이성교제		재선거 규정		
		교외활동		대의원회 구성		
		교외생활지도		대의원회 기능		
	정보 통신	정보통신(인터넷 사용)		대의원회 회의		
		통신기기(MP3, 휴대폰) 관리		학생지원위원회 구성·기능		
	선도	징계		선도의 원칙	제·개정	규정의 제정
				선도위원회의 구성		규정의 개정
				선도위원회의 의결		폐지규정
선도위원회의 기능			폐지규정 부칙			
사안의 설명						
학교장 재심 부의						
징계의 종류·기간						
징계의 방법						
징계의 기준						
징계의 절차						
징계 경감 및 기간 조정						
징계 해제 및 추수지도						
자격제한 및 상실						

다. 정부의 관련 정책(개요)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에 학교자율화, 일제고사(전국학력평가), 자립형사립고, 마이스터고 등 고교다양화300, 대입자율화(3불폐지, 입학사정관제 등), 그린마일리지제, 학생인권 조례, 휴대전화 금지 조례 등의 교육지침을 발표하면서 교육계에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주요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였다.

1) 그린마일리지제(Green Mileage system)

'그린마일리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 상벌점 제도이다. 체벌이 사회적문제가 되자 '체벌의 대안으로 상벌점제를 학교현장에 도입하겠다(교육과학기술부,2008).' 는 것이다. 학교생활상벌점제인 '그린마일리지'는 전국 초·중·고교의 10%에 이르는 1858개 학교에서 2009년부터 시범운영 중이며 2011년까지 전 학교에 도입된다고 하였다. 2010년부터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상·벌점제를 일제히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매 학기말에 상·벌점 통계를 바탕으로 모범학생을 표창하고, 모범학급을 표창한다는 것이다.

그린마일리지의 목적은 첫째, 학교생활규정을 어긴 학생을 체벌이 아닌 벌점으로 지도하고, 선행 학생에게는 상점을 주어 독려한다. 둘째,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 자세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킨다. 셋째, 준법정신 및 봉사정신 함양과 질서의식의 생활화를 유도한다. 넷째, 교사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생활지도로 인성교육의 결실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찬성 의견은 체벌이 없어져 학생들의 불만이 줄어들고 상점을 받음으로써 학생의 자아공지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 의견은 학생들의 잘못을 점수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타당치 않으며 친구끼리 상점을 위해 서로 고자질 할 수도 있어 옳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인 '그린마일리지'는 "법과 규칙이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체벌의 대안'이라고도 하며, 이는 잘한 일에는 상점(BP: Blue Point)을, 잘못된 일에는 벌점(RP : Red Point)을 주고, 정해진 봉사활동

등을 하면 교정점수(GP: Green Point, 벌점을 깎아주는 회복점수)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BP는 흔히 선행이나 교사의 일을 도와준 경우에 받으며, 많이 쌓이면 표창장을 준다. RP는 학교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지각·수업시간 소란행위·무질서·흡연·싸움·폭행 등 많이 쌓이면 징계를 받으며, 징계 이후 RP가 또 쌓이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GP는 RP와 연관하여 변화가 있었거나 반성을 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거나 봉사활동을 했거나 할 경우 받는다. GP를 받으면 RP를 그만큼 깎아준다. 상·벌점을 받을 때마다 보호자에게 문자로 통보해주는 디지털서비스, NEIS(국가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연동하여 교내체벌을 근절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강구됐다지만, 처음 이 제도를 시행할 때 학생의 주체적 교육학습권을 침해하고 학생이 단순통제 대상으로 인식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상점과 벌점을 항상 함께 운영할 것, 벌점을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징벌보다 선도를 우선시 할 것, 학생들을 포함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할 것, 규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을 사전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충분히 공지하며, 그 제정 과정부터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 등 규정마련과 시행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을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학교에서는 벌점사항을 학교별로 각기 다르게 운영하다보니 학교 간의 차이로 말미암아 학생·교사간의 불신이 쌓이고, 학부모 또한 ‘교육현장이 점점 법의 테두리만 강조해 정작 중요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어떤 학생은 자기벌점을 감하려고 친구의 그릇된 행동을 교사에게 일러바치고, 후에 그 내용을 당사자가 알게 돼 친구 간 깊은 상처와 함께 갈등관계에 빠지기도 한다. 또 누적벌점이 상한점 이상이면 부모면담, 더 누적되면 학생선도규정을 적용, 자퇴 또는 전학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질책하는 경우도 있다.

2) 학생인권 조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5년까지만 해도 ‘학생두발지도 지침’에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지 않았다. 2005년 초 두발규제를

둘러싼 학생·교사 간 갈등이 잇따라 터진 데 이어 학생들의 집회까지 벌어지면서 두발규제를 할 때 교사와 학부모뿐 아니라 학생의견을 수렴해 규제범위와 지도방법을 정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다. 이때부터 이른바 ‘스포츠형 머리’를 완화하는 학교가 늘어나는 등 변화조짐이 보였지만 두발규제를 전혀 하지 않는 학교는 거의 없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선학교의 두발규제는 이제 ‘학생인권’을 최우선으로 내걸고 있는 G서울시교육감 당선자의 취임으로 큰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조례 제·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의 과반수이상을 야당이 차지해 G당선자가 내달 1일 취임 후 공약인 학생인권조례 통과도 유력하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중·고교의 두발규제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G당선자는 자신이 제정 작업에 깊숙이 관여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 주요내용을 원용할 것으로 알려져 취임과 동시에 인권조례를 도입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아직 도의회를 통과 못했지만, 내달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새로운 도의회의원 과반수이상이 야당의원들이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전언이다.

이 조례 제12조(초안)에 따르면 두발의 전면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두발길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고 있다. 특히 G당선자는 공약이행 자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학생인권·건강·안전강화팀’을 별도로 구성했을 만큼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헤럴드 경제, 2010).

3) 휴대전화소지 금지 조례

교내에서 휴대전화와 휴대용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조례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금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지역은 울산시와 경상남도, 서울시 등 3곳으로 나타났다.

4일 울산시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격론 끝에 '울산시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 7명 가운데 4명의 찬성

으로 가결했다(세계일보,2009).

찬성 측 위원들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나 게임, 동영상, 인터넷 등이 가능한 휴대용 전자기기를 수업시간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학습환경이 크게 침해돼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 측 위원들과 전교조 울산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등은 이 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 10월 '학교의 휴대전화소지 금지 규정은 인권침해'라고 내린 결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조례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울산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돼야 시행할 수 있어 오는 13일 개최 예정인 시의회의 심의결과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경남과 서울에서도 학교 내 휴대전화소지 금지 조례 제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교육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7월 8일 전국에서 처음 '학생휴대전화 관리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던 경남지역은, 경남교육위원회 교육위원 9명 전원이 발의해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시켰으나 최종 심의에 나선 경남도의회가 심의보류 결정을 내리자 경남교육위원회(66) 의장이 '도의회가 도교육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는 "의원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분명하고 조례시행 시기도 내년 3월이어서 일단 심의를 보류한 것"이라며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의견수렴을 한 뒤 재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도 지난 7월 9일 서울시의회가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사용해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며 교내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연말까지 제정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울산대 교육대학원 이00 교수(교육정책학)는 "오사카와 후쿠오카, 뉴욕 등 일본과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많으며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학생이 비상연락을 할 때는 교장 재량으로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며 "우리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에 대한 준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계일보,2009).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는 29일 오후 제 151회 임시회를 열고 '학교 내 학생 휴

대폰 및 휴대 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격론 끝에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울산CBS,2009).

수정안은 휴대전자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학생들이 등교할 때 휴대전화와 전자기기의 소지를 제한하는 원안의 큰 틀을 대부분 유지했다. 표결에서 7명의 교육위원 가운데 4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해 통과했으며, 다음 달 시의회 심의를 거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날 임시회에서는 표결을 두고 찬반논란이 뜨겁게 벌어졌다.

반대 측 이00 교육위원은 “휴대전화는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일선 학교에서 시행될 경우 오히려 집행과정 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조례안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00 위원 역시 “인권위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빈대 한 마리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더욱 더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교육감이 교장에게 재량을 주도록 지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조례안을 찬성하는 이◇◇ 위원은 “그동안 충분한 여론수렴이 이뤄졌다고 본다. 정보화 사회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동안 조례안 입법을 반대해 온 단체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만큼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도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전교조 울산지부 도00 정책실장은 “휴대전화소지 금지 조례는 이미 국가기관인 인권위에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시의회 일정에 맞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과 경남에서도 이 같은 조례안 제정을 시도했지만 찬반 격론으로 심의가 보류되고 있는 만큼 울산지역에서 첫 시행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울산CBS, 2009).

Ⅲ. 연구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A고등학교의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1·2차 설문을 실시하였고, 서귀포시 6개 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 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한 설문지 중에서 결측값이 있거나, 잘못 표기한 설문 문항은 제외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의 도구

이 연구에 사용할 측정도구는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의 내용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학교규정 인지교육'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특정집단 학생·교사의 인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로, 1차 설문지를 구성, 지도교수의 전문적인 조언과 자문을 통해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최종 제작한 질문지를 학생 및 교사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양호도는 전수조사 후 기술통계를 적용하였다.

1차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학교규정인지교육을 실시하기 이전에 일상에서의 자기성향(10문항),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15문항), 학교에서의 상황적 특성(15문항) 등의 내용체계(총 40문항)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 후 연구의 대상인 학생들에게 학교규정인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하였고, 대입·적용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2차 설문지를 제작, 적용하였다.

2차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인지교육을 실시한 이후의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 변화(10문항), 학교규정에 대한 기대 성향(10문항) 등의 내용(총 20문항)으로, 이 역시 지도교수의 검토,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설문을 제작,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지역 내의 6개 학교를 방문, 생활지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그 설문지의 구성내용을 '일상에서의 자기성향(5문항)', '학교

규정에 대한 인식조사(10문항)', '학교에서의 상황적 특성(10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이러한 1·2차교사의 설문분석을 통해 '생활적응력' 증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가. 학생 설문지 내용 구성

1) 1차 설문지 내용

1차 설문지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III-1> 1차 설문지의 영역별 문항 구성

대상	문항내용		문항수
학생	일상에서의 자기성향	규칙준수 정도, 자신에 대한 계율, 자신의 성격, 스트레스 인식, 변화와 적응 등	10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	규정의 필요성, 규정 인지 여부, 규정에 대한 실천 여부, 규정에 대한 적응, 학교와 규정과의 관계, 규정 적용에 대한 형평성 등	15
	학교에서의 상황적 특성	학교분위기 따른 학교규정 적용, 상황에 대한 인식, 규정인지 이행 수준 등	15

① 일상에서의 자기성향

일상에서의 규칙준수, 자신에 대한 계율, 자신의 성격, 스트레스 인식 정도, 변화와 적응 등에 따른 연구대상 집단의 본질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②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

학교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정도 및 필요성, 규정인지 후 실천여부, 규정적용에 대한 형평성, 규정의 적응여부 등을 이해하고, 학교규정에 대한 현실적인 사고 및 실천적 태도(attitude) 등 다양한 인식 정도를 가늠하고자 했다.

③ 학교에서의 상황적 특성

학교분위기에 따른 학교규정 적용 여부, 상황에 대한 인식, 규정인지 이행 수준 등 실제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반응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학교규정 인지도교육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2) 2차 설문지 내용

2차 설문지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III-2> 2차 설문지의 영역별 문항 구성

대상	문항내용		문항수
학생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 변화	학교 규정에 대한 기억, 인지교육과 실천관계 규정이해와 규정준수, 규정과 공동체생활, 학생의 본분과 규정과의 관계	10
	학교규정에 대한 기대 성향	학교와 규정과의 관계, 학교규정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학교규정 숙지에 대한 인식, 학교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0

①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변화

학교규정에 대한 기억, 인지교육과 실천관계, 규정이해와 준수, 규정과 공동체생활, 학생의 본분과 규정과의 관계 등 인식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② 학교규정에 대한 기대성향

학교와 규정과의 관계, 학교규정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학교규정 숙지에 대한 인식, 학교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 기대성향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나. 교사 설문지 내용 구성

생활지도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III-3> 교사 설문지의 영역별 문항 구성

대상	문항내용		문항수
교사	일상에서의 자기성향	규칙준수 정도, 자신에 대한 계율, 변화와 적응, 지도 시 스트레스 인식 등	5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	규정의 필요성, 규정 실행 여부, 규정인지 교육 실시 여부, 규정의 중요성, 규정의 게시, 학교와 규정과의 상관성 등	10
	학교에서의 상황적 특성	학교 분위기, 학교규정의 적용, 상황에 따른 지도, 규정의 인지수준, 사례별 벤치마킹 등	10

① 일상에서의 자기성향

연구대상이 평소 가정·학교생활에서의 자신의 느낌과 견해를 설문을 통해 일상적인 규칙준수, 자신에 대한 계율, 변화와 적응, 지도 시 스트레스 인식 정도, 변화와 적응 등의 집단 성향 및 보편적인 특징을 알아보고자 했다.

②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

규정의 필요성, 규정 실행 여부, 규정인지 교육실시 여부, 규정의 중요성, 규정의 게시, 학교와 규정과의 상관성 등에 있어 교사는 실무 담당자이면서 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력자로서 규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했다.

③ 학교에서의 상황적 특성

학교 분위기, 학교규정의 적용, 상황에 따른 지도, 규정의 인지수준, 사례별 벤치마킹 등 학교 분위기에 따른 학교규정 적용 여부, 상황에 대한 인식, 규정인지 이행 수준 등 실제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지도교사의 반응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학교규정 인지교육의 적용범위를 가늠하고자 하였다.

다. 학교규정 인지교육의 내용 구성

학교규정 인지교육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이 Atkinson & Shiffrin의 정보이론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실시하였다.



[그림 5] Atkinson & Shiffrin의 이론을 적용한 학교규정 인지교육 모형

<표 III-4> 학교규정 인지교육의 내용 구성

대상	학교규정 교육내용		시행
학생	학교규정의 강조	학교규정 이해와 준수, 규정과 공동체 생활, 학생의 본분과 규정과의 관계(전체교육)	100분
	현장지도의 실제	등하교(지각, 교통안전, 용의), 일과(질서, 정숙), 연중(학교폭력, 규정인지 교육)	80시간
	규정게시 및 홍보	학급 유인물, 게시판, 책자(현장)	90일
	홈페이지 탑재	학교 구성원 열람(개방), 학교규정 정보공시, 학교규정 관련 질의·답변 배너 마련	매일
	전체대상 규정교육	학교규정인지교육 강화(전체조회 시, 체험활동, 봉사 활동)	12회
	캠페인 전개	양지인의 날, 학교폭력예방결의, 청소년의 날	3회
	상벌제 시행	그린마일리지제 조성(칭찬·격려 지도), 양지인의 멋	연중
	학생인권관련	인권·자율·책임의 생활지도, '우리'를 생각하는 수련활동(단체수련 참가)	1회
	학교폭력예방 관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학교폭력예방 설문 조사, 학교폭력예방 지역사회 협력 및 상담망 구축	연중
	'친한 친구' 주간	'친한 친구' 주간 결의대회 개최	2회
	행복한 학교만들기 캠페인	상담활동의 내실화 및 상담실 운영의 활성화 (학교자원봉사자 및 상담교사 활용)	연중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 전체조회 시 교통·생활안전·수상안전교육 실시	연중
	바람직한 학생문화 정착	청소년단체 및 동아리 활동의 확대, 학생문화축제 참가(학생문화원 일대),	1회 연중
모범생 표창	양지인 상, 동문회 상, 청소년 상, 그린마일리지 상	4회	

① 규정의 강조 및 현장 지도

수업 전 규칙준수와 관련하여 틈새 이용, 매일 아침 교문 및 실내지도 시 연구대상이 지도현장을 목격함으로써 간접 시사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② 게시 및 홍보 / 홈페이지 탑재

학급 유인물, 학교게시판, 책자(현장) 발간 시 해당 규정을 수록, 학교구성원 열람을 위해 홈페이지에 탑재, 학교규정 정보공시에 따라 개방, 학교규정 관련 질의·답변 배너를 마련, 운영하고 있다.

③ 전체대상교육 / 캠페인 전개

전체조회 시, 체험활동, 봉사활동 시에 해당규정을 교육하였고, 전체조회, 양지인의 날, 학교폭력예방결의대회, 청소년의 날 행사 등에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④ 행복한 학교만들기

상담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자원봉사자 및 상담교사 활용하여 상담실 운영을 활성화,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차원이 학교규정인지교육을 실시하였다.

⑤ 상벌제 시행 / 모범생 표창

그린마일리지 제도 시행으로 상벌점 운영(그린마일리지상), '양지인의 멋' 상점제(양지인상), 개교기념(동문회상), 5월 청소년의 날(청소년상)을 운영하고 있다.

3. 연구의 설계

가. 연구의 절차

‘문제분석 ⇒ 설문 설계 및 조사 ⇒ 평가(통계·분석) 및 일반화’의 단계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문제분석 : 선행연구의 고찰 및 자료검토·분석 계획서 작성
- 2) 설문 설계 및 조사 : 규정 인지도 및 현행 학교규정 교육체제(1차 설문), 규정인지교육 효과 및 학교생활적응 관련(2차 설문), 생활지도담당교사 인터뷰.
- 3) 평가(통계·분석) 및 일반화 : 연구의 실행 결과자료 파악 후 전반적 평가(통계 및 분석), 논문보고서 작성

나.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범위 및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문제의 범위는 ‘학교규정 인지교육 강화’로 ‘학교생활적응력을 증진’ 하는 데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을 일반계 고등학생들로 한정했기 때문에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등의 다른 학교에 적용이 수월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학생·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질문지법에 의존하였고, 교사 인터뷰를 통한 보완으로 일관된 조사보다는 여러 측면에서의 분석을 하였다.

다.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설문 수집기간은 2010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를 지정하고, 그 사이에 1·2차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대상 학교의 담임교사의 허락을 얻은 후, 자료수집의 목적과 설문 취지를 담임교사에게 설명, 전달하였다. 대상학생의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비밀보장, 설문내용, 응답방식을 설명 후 질문지를 배부하고, 자가 보고식으로 기입한 후 자료를 즉시 회수 후 처리하였다.

라.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통계처리는 SPSS(Ver 14.0) 프로그램을 적용,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둘째, 각 문항에 대한 유의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통계처리는 빈도분석 및 비모수 단일유목 카이스퀘어(X²) 검증을 실시, 항목별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밖의 교사인터뷰는 다른 학교의 규정인지교육 실태 및 현황, 규정적용 사례 및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반응 등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연구의 방향과 유사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데 유익했다. 따라서 이를 분석, 도표화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가 좀 더 사실적일 것 같아 부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학교규정에 관한 인식조사

가. 학생 설문조사

1) 1차 설문지 조사

① '일상에서의 자기성향'에서는 일상에서의 규칙준수, 자신에 대한 계율, 자신의 성격, 스트레스 인식 정도, 변화와 적응 등에 따른 연구대상 집단의 본질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②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에서는 학교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정도 및 필요성, 규정인지 후 실천여부, 규정적용에 대한 형평성, 규정의 적응여부 등을 이해하고, 학교규정에 대한 현실적인 사고 및 실천적 태도(attitude) 등 다양한 인식 정도를 가늠하고자 했다.

③ '학교에서의 상황적 특성'에서는 학교분위기에 따른 학교규정 적용 여부, 상황에 대한 인식, 규정인지 이행 수준 등 실제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반응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학교규정 인지교육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2) 2차 설문지 조사

①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변화'에서는 학교규정에 대한 기억, 인지교육과 실천 관계, 규정이해와 준수, 규정과 공동체생활, 학생의 본분과 규정과의 관계 등 인식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② '학교규정에 대한 기대성향'에서는 학교와 규정과의 관계, 학교규정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학교규정 숙지에 대한 인식, 학교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 기대성향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나. 교사 설문조사

1) 일상에서의 자기성향

① 평소 가정·학교생활에서의 교사 자신의 느낌과 견해, 학교에서의 실제 자신의 지도 성향 등 파악하고자 했다.

② 일상적인 규칙준수, 자신에 대한 계율, 변화와 적응, 지도 시 스트레스 인식 정도, 변화와 적응 등의 집단 성향 및 보편적인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

2)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

① 교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규정의 필요성, 규정 실행 여부, 규정인지 교육 실시 여부를 파악하고자 했다.

② 교사는 학생과는 달리 연구의 조력자로서의 인식정도를 가늠하기 위해서 규정의 중요성, 규정의 게시, 학교와 규정과의 상관성 등의 내용을 질의하였다.

3) 학교에서의 상황적 특성

① 생활지도 담당자로서의 학교 분위기, 학교규정의 적용, 상황에 따른 지도, 규정의 인지수준, 사례별 벤치마킹 등 학교 분위기에 따른 학교규정 적용 여부,

② 상황에 대한 인식, 규정인지 이행 수준 등 실제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지도교사의 반응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학교규정 인지교육의 범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 교사 인터뷰

1) 생활지도 담당자로서의 현재 학교의 실정, 상황에 대한 인식 및 학교규정의 적용을 참고하고자 하였다(부록참조).

2) 규정인지 사례, 규정인지 이행 수준 등 실제 상황에 따른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반응을 참고로, 학교규정 인지교육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2. 연구결과 분석

가. 학생 설문지 분석

1) 1차 설문지 분석

1차 설문의 목적은, 학교규정에 대한 어떤 가미나 제약도 가하지 않고 오로지 주어진 상황에서의 학생들의 인지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지교육의 실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학교규정인지의 필요 여부, 규정인지 학습 내용의 방향 모색 및 학습의 심화 정도 예측 그리고 학교생활적응력에 상관성을 이끌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설문은 연구과정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전·사후설문조사 형태의 비교조사 과정을 통한 질적 연구 및 일반화 과정이 아니다.

즉, 사전·사후의 발문내용이 실제 학교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욕구에 대한 심층분석을 위한 것이었고, 연구의 근거 및 인지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선행조건의 전개 과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별 발문을 달리 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의 심리적 파악 및 사실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분석을 피하고자 다음의 3개 영역으로 나뉘어 실시하였다.

① 일상에서의 자기성향

본 영역이 질의문항은, 연구대상자의 개별 및 집단의 성향을 밝힘으로서, 그 집단이 향후 특정요소의 변화에 대해 이해하거나 분석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표 IV-1> 일상생활에서의 자기성향

인식	질 의 문 항 (학생용 1차 설문)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	나는 스스로 자아존중감이 있다.
규칙준수에 대한 인식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규칙을 잘 지킨다.
학교생활수법의 지수	나는 실제로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자기절제에 대한 인식	타인의 실수는 인정하되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다고 느낀다.
규칙과 관련된 경험	나는 어렸을 때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해서 야단맞은 적이 있다.
사회적 역할의 기대	내가 모범적이지 못하면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과정의 적응	나는 학교의 모든 변화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며, 늘 수동적이다.
교사와의 대화	나는 선생님과 대화나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교사 지도에 대한 인식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훈화나 일방적 지도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새로운 변화의 적응	나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싶어도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다.

위 설문은, 실제 연구대상자가 자아존중감과 규칙준수에 어느 정도 기본조건과 학교에서의 생활 모습 등 개별적 성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기통제의 정도, 규칙과 연관된 경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 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그리고 학교과정의 적응, 학생 교사와의 의사소통, 훈화나 지도에 따른 스트레스 여부, 새로운 변화에 적응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IV-2> 일상생활에서의 자기 성향 분석

인 식 사 항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chi^2(df)$
1.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	299(N) 100%	1 0.3	12 4.0	60 20.1	166 55.5	60 20.1	284.629(4) .000***
2. 규칙준수에 대한 인식	299(N) 100%	- -	74 24.7	110 36.8	105 35.1	10 3.3	84.960(3) .000***
3. 학교생활수법의 지수	300(N) 100%	2 0.7	34 11.3	136 45.3	116 38.7	12 4.0	254.267(4) .000***
4. 자기절제에 대한 인식	298(N) 100%	8 2.7	140 47.0	91 30.5	52 17.4	7 2.3	217.067(4) .000***
5. 규칙과 관련된 경험	300(N) 100%	31 10.3	139 46.3	47 15.7	78 26.0	5 1.7	176.667(4) .000***

6. 사회적 역할의 기대	298(N) 100%	15 5.0	144 48.3	46 15.4	77 25.8	16 5.4	192.973(4) .000***
7. 학교과정의 적응	297(N) 100%	48 16.2	128 43.1	68 22.9	52 17.5	1 0.3	140.997(4) .000***
8. 교사와의 대화	299(N) 100%	18 6.0	62 20.7	61 20.4	126 42.1	32 10.7	115.532(4) .000***
9. 교사의 지도에 인식	300(N) 100%	13 4.3	64 21.3	44 14.7	142 47.3	37 12.3	162.233(4) .000***
10. 새로운 변화의 적응	300(N) 100%	16 5.3	56 18.7	93 31.0	121 40.3	14 4.7	147.967(4) .000***

위에서, 자신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연구대상 중 75.6%의 학생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4.3%의 학생만이 자아존중감에 대해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이 일상생활에서의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P < .001$). 그리고 38.4%의 학생이 타인에 비해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24.7%의 학생과 미온적 응답의 36.8%의 학생은 규칙에 대해 깊이 생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학생만이 일상생활의 규칙을 지키려 노력하나 그렇지 못한 학생의 비율에 비해 낮은 편이며, 향후 학교규정 인지교육의 필요성과 가치가 충분히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P < .001$).

학교생활에 있어서는, 42.8%의 학생이 실제로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12.0%의 학생만이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절반 이상의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규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확고히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향후에 학교규정인지의 교육적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P < .001$).

그리고 19.7%의 학생이 자기절제를 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49.7%의 학생만이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역시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타인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어긋난 행동에는 규칙이행을 요구하는 의지로 판단되며, 학교규정의 이행에 무게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P < .001$).

한편, 27.7%의 학생이 어릴 적에 주어진 과제이행을 못한 것에 대해 기억인지가 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주어진 과제이행과정에서 규칙에 어긋난 행동을 했

을 때 가해진 행동수정이 오랫동안 지속됨을 알 수 있다($P < .001$).

그 밖에 56.6%의 학생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릴 적에 주어진 과제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규칙에 따랐거나, 과제이행이 빈번하지 않음으로 해서 행동수정이 가해지지 않았을 경우로 해석되며, 이를 보아 규정인지의 경우도 연속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P < .001$).

또한, 31.2%의 학생이 사회적 역할(social role)에서 페르조나(Persona)³⁾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53.3%의 학생이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절반 이상의 학생이 타인과의 행동이나 생활을 의식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낸다. 그것은 집단생활에서 상대에 대한 호기심이나 관심이 없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를 배려하는 이해심이 부족으로 집단생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를 보아 정해진 규칙이 있어야 질서 있는 생활이 될 수 있으므로 학교규정인지가 필요하다($P < .001$).

학교과정의 적응에서도, 59.3%의 학생이 학교과정에 적응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17.8%의 학생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학생이 모든 변화과정의 학교적응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학교규정 인지교육을 강화하면 이에 적응하려는 의지도 향상될 것이라 판단된다($P < .001$).

한편, 52.8%의 학생이 교사와의 대화나 의사소통에서 원활한 교류나 상호작용이 빈약하며, 26.7%의 학생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학생들이 교사를 자유스런 대화상대가 아닌 경외심 또는 막연히 불편하게 여겨지는 데다 서로의 관심사나 세대차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다보니 진솔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P < .001$). 사전에 학교규정의 제시 없이 일상적 지도방법을 대입·구사하면 이에 순응적인 태도보다는 저항으로 일관하려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 판단된다($P < .001$).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59.6%의 학생이 교사의 훈화나 일방적 지도에 수긍이 어려우며, 25.6%의 학생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학생들은 교사의 훈화나 지도가 매 상황에 따라 즉흥적, 획일적 적용을 하거나, 시대의 흐

3) 자아가 외부세계와 관계를 맺고 이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행동양식.

름에 걸맞은 규정 제·개정이 안된 경우에도 지시적 강요라 여겨질 수 있다 (P<.001). 따라서 학교규정이 사전제시 없이 일방적 지도를 강조하면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저항하려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 판단된다(P<.001). 끝으로, 45.0%의 학생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 적응하려고 해도 우선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이 미흡한 실정이며, 24.0%의 학생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②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

본 영역이 질의문항은, 평소 학교규정에 대한 다양한 느낌과 사고가 전제되었을 때 규정 전반에 대한 구상과 실행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에, 연구대상자의 인식정도는 본 연구에 접근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필수요소라 생각하여 구성하였다.

<표 IV-3>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 영역

인식사항	질의문항 (학생용 1차 설문)
학교규정의 필요성	나는 학교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규정의 내용 인지	나는 학교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다.
학교규정의 필연성	나는 학교규정이라도 있어서 위계질서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학교규정의 실천의지	나는 학교규정이 필요한 걸 알고 있지만 실천이 쉽지 않다.
학교규정 내용 인지여부	나는 학교규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모른다.
학교규정 인지교육 이수여부	나는 학교규정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
학교규정의 내용 수렴	나는 학교규정이 너무나 복잡할 것 같아서 알고 싶지 않다.
학교규정의 관심 여부	나는 학교규정의 필요한지조차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학교규정과 생활적응 관련	나는 학교규정의 내용을 파악하지만 생활적응과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학교규정과 생활적응 상반	나는 학교규정을 파악하지 못하지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학교규정과 일과의 상관성	나는 학교규정 때문에 모든 일처리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학교규정의 효과성	나는 학교규정 때문에 그릇된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학교규정의 접근성	나는 학교규정이 학급에 게시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학교규정의 형평성	나는 학교규정이 모든 학생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학교규정과 저촉성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는 것은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까 우려해서이다.

위 설문은, 학교규정이 필요한지, 아울러 학교규정 인지교육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학교규정과 질서의 상관관계를 묻고, 학교규정에 무분별한 부정적인 사고는 없는지, 가치관 정립이 가능한 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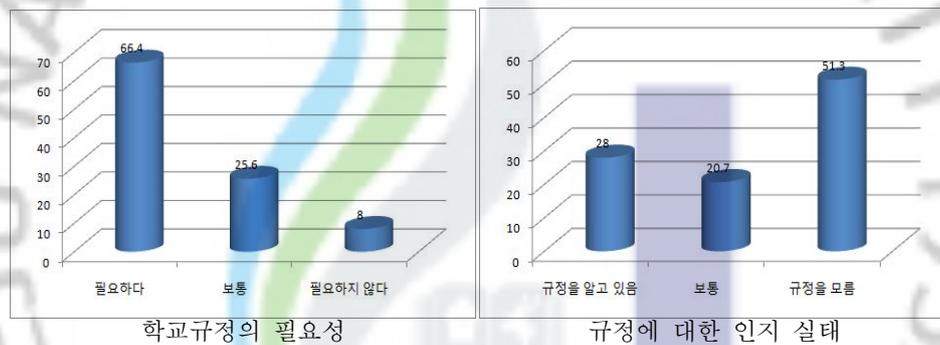
그리고 학교규정의 필요성 및 실천적 이행과 인지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는지, 인지실태 및 교육이수 경험, 규정인지교육의 확대 여부, 학교규정의 수렴 태도 및 관심 여부를 묻고자 하였다. 또한, 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와 학교규정과 일과의 영향은 어떠한지, 일탈적인 사고의 관계 및 학교규정의 지속적인 게시 여부, 학교규정 적용의 형평성, 새로운 도전에 영향력 등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IV-4>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 분석

인식사항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chi^2(df)$
1. 학교규정의 필요성	300(N) 100%	6 2.0	18 6.0	77 25.6	176 58.7	23 7.7	329.900(4) .000***
2. 학교규정의 내용 인지	300(N) 100%	6 2.0	114 38.0	76 25.3	100 33.3	4 1.3	180.400(4) .000***
3. 학교규정의 필연성	298(N) 100%	3 1.0	27 9.1	96 32.2	164 55.0	8 2.7	321.362(4) .000***
4. 학교규정의 실천의지	299(N) 100%	9 3.0	53 17.7	59 19.7	164 54.8	14 4.7	260.582(4) .000***
5. 학교규정 내용 인지여부	300(N) 100%	14 4.7	70 23.3	62 20.7	144 48.0	10 3.3	196.267(4) .000***
6. 학교규정 인지교육 이수 여부	300(N) 100%	17 5.7	132 44.0	88 29.3	60 20.0	3 1.0	184.433(4) .000***
7. 학교규정의 내용 수렴	300(N) 100%	29 9.7	114 38.0	107 35.7	40 13.3	10 3.3	149.767(4) .000***
8. 학교규정의 관심 여부	299(N) 100%	17 5.7	116 38.8	62 20.7	100 33.4	4 1.3	162.622(4) .000***
9. 학교규정과 생활적응 관련	299(N) 100%	13 4.3	124 41.5	90 30.1	62 20.7	10 3.3	162.355(4) .000***
10. 학교규정과 생활적응 상반	299(N) 100%	2 0.7	128 42.8	61 20.4	93 31.1	15 5.0	185.666(4) .000***
11. 학교규정과 일과의 상관성	297(N) 100%	21 7.1	151 50.8	77 25.9	41 13.8	7 2.4	223.219(4) .000***
12. 학교규정의 효과성	296(N)	14	75	95	108	4	152.074(4) .000***

	100%	4.7	25.3	32.1	36.5	1.4	
13. 학교규정의 접근성	296(N) 100%	38 12.8	92 31.1	40 13.5	111 37.5	15 5.1	110.318(4) .000***
14. 학교규정의 형평성	297(N) 100%	22 7.4	112 37.7	88 29.6	68 22.9	7 2.4	131.367(4) .000***
15. 학교규정과 저촉성	298(N) 100%	14 4.7	71 23.8	83 27.9	108 36.2	22 7.4	109.282(4) .000***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 보면 [그림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응답자 중 66.4%의 학생이 학교규정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학교규정의 인지에 있어 40.0%의 학생은 학교규정을 모르는 것으로, 25.3%는 미온적 응답이나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P < .001$).



[그림 6] 학교규정에 대한 필요성과 인지실태(학생)

그리고 57.7%의 학생이 학교규정 때문에 질서가 있다고 답했으며, 10.1%의 학생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규정에 대해서 더 온전한 관점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무분별한 학교규정에 부정적인 사고를 지양, 가치관을 정립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석된다($P < .001$). 그리고 59.5%의 학생이 학교규정의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실천이 쉽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20.7%의 학생이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학교규정 인지도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P < .001$).

학교규정의 내용 인지여부에 대해서도, 연구대상의 51.3%가 학교규정의 내용을 구체적 파악을 못한 것으로 응답했고, 28.0%의 학생만이 학교규정을 아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학교규정의 내용 인지도교육은 더 절실하다고 보겠다($P < .001$).

한편, 21.0%의 학생이 학교규정에 대한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으나 49.7%의 학생은 학교규정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규정인지교육을 확대시킬 필요가 재차 확인되었다($P<.001$). 또한 연구대상 중 16.6%의 학생이 학교규정에 대해 복잡해서 알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47.7%의 학생은 인지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다($P<.001$).

학교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34.7%의 학생을 제외한 44.5%의 학생이 학교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을 해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밖의 35.7%의 학생은 미온적이므로 응답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규정인지의 필요성은 다분하다($P<.001$). 생활적응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연구대상 중 24.0%의 학생이 학교규정은 생활적응과는 별개라고 응답하고 있으나, 45.8%의 학생은 학교규정과 생활적응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30.1%의 학생도 호응의사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체로 학교규정인지와 학교생활적응력은 상관성이 밀접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강화된다면 학교생활적응력은 좀 더 증진될 것으로 판단된다($P<.001$).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는 36.1%의 학생이 학교규정을 잘 모르지만 학교생활에 적응되는 것으로 응답했으나 이는 큰 동요 없이 생활하는 일부 인문고 학생들의 경향으로 보여지며, 20.4%의 학생은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미온적이거나 43.5%의 학생과 더불어 학교규정이 없어진다면 학교생활적응이 어려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P<.001$). 그리고 16.2%의 학생이 학교규정을 따지다보니 시간할애로 인해 일처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규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도 보아지며, 57.9%의 학생은 그렇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규정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일과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P<.001$).

학교규정과 평소 사고와 관련해서는 연구대상 중 30.0%의 학생이 규정과는 관계없이 그릇된 방향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37.9%의 학생은 학교규정으로 인해 일탈적인 생각을 자제한 것으로 응답하였다($P<.001$). 그러므로 학교규정은 필수적이며, 학생의 생활적응력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2.6%의 학생이 학교현장에서 학교규정의 게시된 것을 한 번도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43.9%의 학생만이 게시된 것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전체비율에 반해서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학교규정을 흔히 접할 기회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P < .001$).

학교규정 적용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연구대상 중 25.3%의 학생이 학교규정이 모든 학생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된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45.1%의 학생은 과거의 경험상 공평한 적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앞으로 보다 엄정하고 공평한 규정적용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P < .001$).

끝으로 28.5%의 학생은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 학교규정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석에 따라서는 걸림돌이 될 정도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것이 학교규정에 저촉될 만큼 규정위반의 소지가 다분한 도전으로도 볼 수 있어, 그렇다면 학교규정이 견제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43.6%의 학생이 자신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규정 시행으로 학생들을 규제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P < .001$).

③ 학교에서의 상황적 특성

본 영역이 질의문항은, 앞에서 제시된 두 개 영역의 질의내용이 연구에 충족되더라도 학교에서의 주어진 상황들이 어떤 교육적인 환경과 특징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보완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성하였다.

<표 IV-5> 학교에서의 상황적 특성 인식 영역

인식	질 의 문 항(학생용 1차 설문)
학교규정과 조직체계	학교가 조직화되고 체계화하는 일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학교규정과 학교환경	학교환경이 무질서하거나 시끄러워서 가끔 화가 날 때가 있다.
학교규정의 효용성	학교가 높은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시시한 학교가 될 것 같다.
학교규정과 학습 분위기	학습 분위기가 확립되지 않아 무질서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교규정과 지도체계	떠드는 학생이 있어도 선생님의 지도가 거의 없는 편이다.
학교규정과 교사의 기대치	선생님은 내 행동에 대해 언제나 준수한 모습을 기대하신다.
학교규정위반 시 교사 지도	선생님은 규정위반 등의 내 실수를 결코 이해하려 하지 않으신다.
학교규정과 적용의 공정성	친구가 심하게 장난하는데도 규정은 엄정히 적용되는 것 같지 않다.
학교규정인지 미흡	나는 학교규정을 잘 몰라서 지도나 주의 등을 받은 적이 있다.

학교규정위반 경험	나는 학교규정의 중요성을 알지만 때로는 무시하고 지나친다.
학교규정의 강제성 여부	나는 학교규정이 너무 엄하고 강제적이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교규정과 상반된 즉흥 행동	나는 질서보다는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학교규정과 상반된 행동	학교생활에서의 나의 행동은 집에서 하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학교규정의 인지 정도	학교규정은 선생님의 지도 시 가끔 들은 정도로 감지하고 있다.
학교규정인지 미흡 및 위반	또래 친구들이 학교규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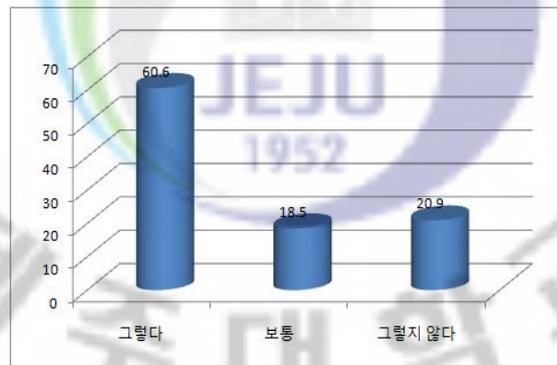
위 설문은, 학교의 조직화와 체계화를 중시하고 있는지, 안정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규정의 필요한지, 학교환경이 무질서하거나 시끄러울 때 학교규정의 요구가 있는지에 묻고자 하였다. 그리고 학교가 높은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 학교규정을 잘 지키려는 심리작용이 나타나고 있는지, 떠드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 학생행동에 기대수준, 규정위반 시 판단과 지도에 관심 정도 파악, 규정이 엄정 적용되는지, 학교규정을 잘 몰라서 지도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규정의 실천여부, 학교규정 시행의 강제여부, 질서의식보다는 상황에 따른 행동 여부, 학교와 집에서의 행동변화, 학교규정을 접한 경험, 학교규정인지 전체교육 이수여부, 규정위반에 대해서도 규정을 몰라서 위반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IV-6> 학교에서의 상황적 특성 인식 분석

인식사항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chi^2(df)$
학교규정과 조직체계	299(N) 100%	9 3.0	54 18.1	109 36.5	122 40.8	5 1.7	199.110(4) .000***
학교규정과 학교환경	299(N) 100%	1 0.3	40 13.4	56 18.7	171 57.2	31 10.4	285.264(4) .000***
학교규정의 효용성	299(N) 100%	24 8.0	116 38.8	107 35.8	43 14.4	9 3.0	159.378(4) .000***
학교규정과 학습분위기	295(N) 100%	7 2.4	47 15.9	56 19.0	161 54.6	24 8.1	245.525(4) .000***
학교규정과 지도체계	297(N) 100%	22 7.4	109 36.7	76 25.6	86 29.0	4 1.3	133.185(4) .000***
학교규정과 교사의 기대치	298(N) 100%	3 1.0	107 35.9	117 39.3	65 21.8	6 2.0	195.423(4) .000***

학교규정위반 시 교사 지도	298(N) 100%	19 6.4	137 46.0	81 27.2	54 18.1	7 2.3	182.805(4) .000***
학교규정과 적용의 공정성	298(N) 100%	13 4.4	96 32.2	81 27.2	105 35.2	3 1.0	154.685(4) .000***
학교규정인지 미흡으로 인한 규정위반	298(N) 100%	25 8.4	111 37.2	47 15.8	107 35.9	8 2.7	149.450(4) .000***
학교규정위반 경험	297(N) 100%	2 0.7	36 12.1	89 30.0	168 56.6	2 0.7	333.455(4) .000***
학교규정의 강제성 여부	299(N) 100%	27 9.0	140 46.8	60 20.1	52 17.4	20 6.7	153.057(4) .000***
학교규정과 상반된 즉흥 행동	296(N) 100%	1 0.3	21 7.1	80 27.0	186 62.8	8 2.7	405.047(4) .000***
학교규정과 상반된 행동	298(N) 100%	31 10.4	132 44.3	64 21.5	64 21.5	7 2.3	147.745(4) .000***
학교규정의 인지 정도	297(N) 100%	3 1.0	35 11.8	84 28.3	160 53.9	15 5.1	277.327(4) .000***
학교규정인지 미흡 및 위반	297(N) 100%	10 3.4	52 17.5	55 18.5	134 45.1	46 15.5	139.044(4) .000***

학교규정과 관련하여 상황적 특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 보면 [그림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응답자 중 60.6%의 학생이 학교규정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그림 7] 학교규정인지 미흡으로 인한 규정위반

그리고 42.5%의 학생이 학교의 조직화와 체계화를 중시하고 있으며, 24.1%의 학생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정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규정의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P < .001$). 학교의 무질서에 대해 67.6%의 학생이

학교환경이 무질서하거나 시끄러울 때 화가 나며, 13.7%의 학생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학교규정의 강화를 요구하는 경향이 짙다($P < .001$).

또한 17.4%의 학생이 학교가 높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46.8%의 학생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그리고 62.7%의 학생이 학교규정이 각인되어 규칙을 잘 지키려는 심리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18.3%의 학생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그런데, 30.3%의 학생은 '떠드는 학생이 있어도 선생님의 지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응답했고, 25.6%의 학생은 미온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특정상 많은 비율의 학생이 규정 적용이 안되거나 지도가 약화된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앞으로 규정 강화가 절실하다($P < .001$).

한편 '선생님께서 학생행동에 준수한 모습을 기대한다'고 23.8%의 학생이 응답하고 있으며, 36.9%의 학생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20.3%의 학생은 선생님이 학생의 규정위반 등도 이해하지 못하며, 52.4%의 학생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는 교사로서 학생에 대해 준수함의 기대치가 미약하다고 여겨지며, 규정위반을 하더라도 대개 임의적인 판단과 지도에 그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P < .001$).

규정이 적용에 대해서도 36.6%의 학생과 미온적이기는 하나 27.2%의 학생이 규정의 엄정 적용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36.2%의 학생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이 엄정 적용의 요구되는 대목이다($P < .001$).

그리고 38.6%의 학생이 학교규정을 잘 몰라서 지도를 받은 적이 있으며, 45.6%의 학생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율로 보더라도 많은 수의 학생이 학교규정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위반하는 걸로 보아 규정인지는 학교생활에 있어 필수조건이라 여겨진다($P < .001$). 57.3%의 학생이 학교규정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2.8%의 학생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학교규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P < .001$).

한편, 연구대상 중 24.1%의 학생이 학교규정이 강제적이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55.8%의 학생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절반이상의 학생이 학교규정을 억압적 형태로 수렴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즉 학교규정이 시행에는 큰 무리가 없음

을 시사하고 있다($P < .001$).

또한, 65.5%의 학생이 질서의식보다는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4%의 학생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황에 따른 개별행동이 집단에서는 큰 문제로 야기될 수 있으므로 학교규정 등에 의한 질서교육이 필요하다($P < .001$).

또한 연구대상 중 23.8%의 학생이 학교에서의 행동이 집에서와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으며, 54.7%의 학생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가정의 구성원이 다르고, 두 환경의 공간적 이질성도 있지만 공공수칙, 주변의식, 또래집단의 규범 등을 의식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아지며, 이에 학교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는 학교생활적응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겨진다($P < .001$). 끝으로, 학교규정을 접한 경험은 59.0%의 학생이 선생님의 지도 시 가끔 들은 정도의 수준에서 감지하고 있으며, 12.8%의 학생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규정 인지교육이 전체학생 대상의 인지교육이 아닌 위반행동 지도 시에만 교사가 간헐적으로 제시하고, 학생은 일방적 통보받는 형태의 규정 적용을 알 수 있다($P < .001$).

2) 2차 설문지 분석

2차 설문은, 학생들의 학교규정에 대한 인지실태를 파악한 1차 설문과는 달리 인지교육 강화 후의 변화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함이다. 1·2차 설문의 문항을 그대로 대입하여 전·후 비교를 하기보다 2차 설문에서는 학생들에게 실제 투입·처치한 인지교육이 그 후의 시점에서 어떠한 형태와 양상으로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유사내용의 질의문항을 발문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심리적, 사실적 접근을 통한 다양한 분석을 피하고자 다음의 2개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①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변화

본 영역이 질의문항은, 학교규정 인지교육 후 규정준수 정도와 학교생활에서

의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하였고, 발문 역시 다양성에 대해 치밀하고 복잡한 답의 기대보다는 연구의 기대치를 기준하여 질의를 하였다. 인식정도와 인지교육의 경과 후 주어진 범주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으며, 기존의 사고에서 전환된 향상성이 있을지를 제시하였다.

<표 IV-7>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변화 영역

인식사항	질의문항(학생용 2차 설문)
학교규정의 인지도	나는 학교규정 대해서 어느 정도 알 것 같다.
학교규정인지교육 후 준수여부	나는 인지교육 후 학교규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한다.
학교규정적용의 엄정성	위반 시 지도는 '규정이 엄정 적용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교규정인지의 영속성	학교에서 무질서하게 생활하는 친구를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
학교규정 이해와 위반여부	기본규칙을 이해한다면 규정위반은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규칙의 당위성	모든 일에 규칙이 있어야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규정인지의 신중성	신중함으로 규정을 지켰다고 판단했는데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규정 준수의 필요성	목표달성을 위해 일상적인 규정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규정의 의무 여부	학교규정은 공동의 약속인 만큼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생활에서의 성실성	학교생활에 성실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라 생각해 규정을 준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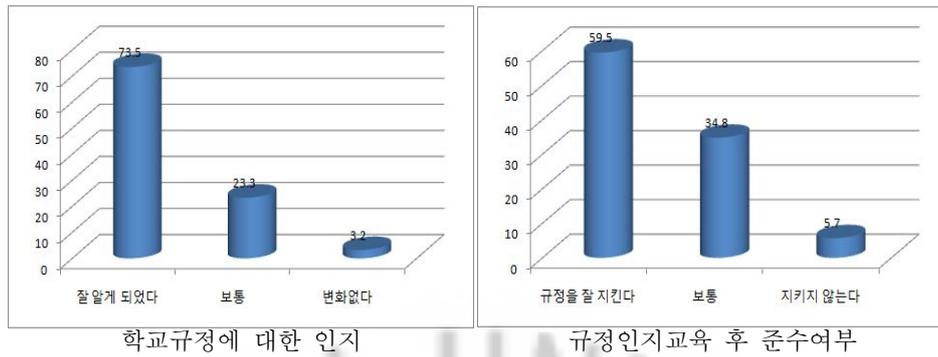
위 설문은, 학교규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규정인지교육 후 학교규정에 준수에 대해 이해와 수렴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규정인지교육 후 학교생활에서의 일탈행동이 줄게 되면 학교생활에 만족도를 높이게 되어 학교생활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규정위반지도 시 규정적용이 엄정한지, 형평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또래의 무질서한 생활의 대한 반응, 규정준수의 상관성, 기본규칙 이해의 정도, 규정인지 미흡으로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묻고자 하였다. 또한, 일상적인 규정준수 이행이 향후 사회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규정인지 교육을 공동체의 의무사항으로 요구하는지, 특히 학교생활에 성실함이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IV-8>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

인식사항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chi^2(df)$
학교규정의 인지도	279(N) 100%	- -	9 3.2	65 23.3	197 70.6	8 2.9	340.054(3) .000***
학교규정인지 교육 후 준수 여부	279(N) 100%	2 0.7	14 5.0	97 34.8	150 53.8	16 5.7	301.018(4) .000***
학교규정 적용의 엄정성	278(N) 100%	1 0.4	35 12.6	121 43.5	111 39.9	10 3.6	230.777(4) .000***
학교규정인지의 영속성	276(N) 100%	4 1.4	35 12.7	88 31.9	134 48.6	15 5.4	216.138(4) .000***
학교규정 이해와 위반 여부	278(N) 100%	5 1.8	48 17.3	70 25.2	140 50.4	15 5.4	208.583(4) .000***
규칙의 당위성	275(N) 100%	5 1.8	48 17.5	77 28.0	134 48.7	11 4.0	203.818(4) .000***
학교규정인지의 신중성	277(N) 100%	11 4.0	71 25.6	74 26.7	116 41.9	5 1.8	158.361(4) .000***
규정준수의 필요성	277(N) 100%	- -	23 8.3	81 29.2	160 57.8	13 4.7	197.498(3) .000***
학교규정의 의무 여부	278(N) 100%	2 0.7	21 7.6	72 25.9	162 58.3	21 7.6	303.187(4) .000***
학교생활에서의 성실성	279(N) 100%	- -	18 6.5	75 26.9	169 60.6	17 6.1	219.910(3) .000***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해 조사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림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응답자 중 73.5%의 학생이 학교규정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그리고 59.5%의 학생은 학교규정 교육 후의 규정인지로 규정을 준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P < .001$).



[그림 8] 학교규정에 대한 인지와 준수여부

그리고 연구대상 중 43.5%의 학생은 학교규정 위반 시 지도를 받는 경우는 규정이 엄정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 학생만이 규정적용이 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대부분 위반하더라도 규정적용 없이 가벼운 경고로 대체했을 수도 있어 앞으로 규정적용에 심사숙고할 사항이다($P<.001$).

한편, 54.0%의 학생이 무질서한 생활의 친구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14.1%의 학생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정준수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질서와 정서적 안정감을 찾은 데에 비해, 그러지 못한 동료들 보면 규정에서 어긋나 보여 심기가 편치 않은 경우라 생각된다($P<.001$).

더욱이, 55.8%의 학생이 기본규칙을 이해하면 규정위반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19.1%의 학생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본규칙을 이해한다는 것이 곧 학교규정과 직결을 의미하며, 인지교육 후 규정위반이 줄어든 것을 반영한 표현이라 하겠다($P<.001$).

응답학생 중 52.7%의 학생이 규칙이 있어야 옳고 그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으며, 19.3%의 학생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리고 43.7%의 학생이 신중히 행동하였지만 인지미흡으로 위반한 경우를 볼 수 있으며, 29.6%의 학생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교규정의 세부 항목에 부연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P<.001$).

또한, 연구대상 중 62.5%의 학생이 일상적인 규정의 준수도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봐서, 인지교육은 단지 학교규정 이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상적 규정준수에도 비중을 두고 있어 향후 사회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진다($P<.001$).

끝으로, 65.9%의 학생이 학교규정은 공동체의 의무사항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8.3%의 학생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특히 66.7%의 학생이 학교생활에 성실함이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적응하려는 긍정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P < .001$).

② 학교규정에 대한 기대 성향

본 영역이 질의문항은, 학교규정 인지교육 후 다양한 느낌과 규정전반에 대한 사고의 전환, 생활자세의 변화와 실천과정에서의 적응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IV-9> 학교규정에 대한 기대성향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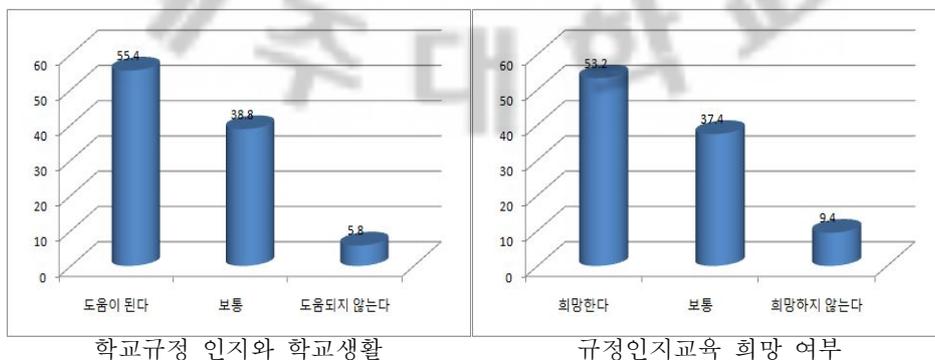
인 식 사 항	질 의 문 항(학생용 2차 설문)
학교규정과 학교변화	학교규정으로 늘 단정한 학교모습이 유지되었으면 한다.
학교변화와 질서의식	질서가 갖춰진 학교만이 모든 면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학교규정과 생활적용	학교규정을 잘 익혀두어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학교규정의 개정여부	학교규정이 시대변화에 따라 개정 또는 일부 수정되었으면 한다.
학교규정의 요약	현재의 복잡한 규정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인지교육을 했으면 한다.
학교규정인지 의무여부	입학 시 규정인지교육은 학교의 의무라고 생각되어 실시했으면 한다.
학교규정인지 지속게시	학교규정이 수칙·현장처럼 특정장소에 지속적으로 게시되었으면 한다.
학교규정인지 지속적용	지속적인 학교규정의 적용보다는 정기적인 규정적용이 되었으면 한다.
학교규정인지 엄정적용	나는 학교규정이 정확히 적용돼서 선의의 학생이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
학교규정인지 전체이행	학교규정이 단체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규범이기에 모두가 지켰으면 한다.

위 설문은, 학교규정이 단정한 모습의 학교를 유지할 것인지, 질서를 갖춘 학교가 모든 면에서 성공 가능한지, 학교규정 인지로 학교적응에 도움이 됐는지, 학생규정의 개정을 기대하는지, 학교규정의 내용요약의 기대욕구, 학교규정 인지교육이 학교의 의무사항인지 반응을 묻고자 하였으며, 학교규정이 지속적인 게시 여부, 정기적인 규정적용, 규정이 명확한 적용, 학교규정의 실천적 반응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IV-10> 학교규정에 대한 기대성향 분석

인식사항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chi^2(df)$
학교규정과 학교변화	279(N) 100%	1 0.4	26 9.3	111 39.8	124 44.4	17 6.1	234.674(4) .000***
학교변화와 질서의식	278(N) 100%	15 5.4	101 36.3	69 24.8	86 30.9	7 2.5	129.050(4) .000***
학교규정과 학교생활 적응	278(N) 100%	- -	16 5.8	108 38.8	140 50.4	14 5.0	178.345(3) .000***
학교규정의 개정여부	278(N) 100%	5 1.8	17 6.1	41 14.7	129 46.4	86 30.9	190.201(4) .000***
학교규정의 요약	275(N) 100%	3 1.1	31 11.3	111 40.4	120 43.6	10 3.6	230.291(4) .000***
학교규정인지의 의무사항 여부	278(N) 100%	3 1.1	23 8.3	104 37.4	128 46.0	20 7.2	228.079(4) .000***
학교규정인지의 지속적 게시	279(N) 100%	4 1.4	39 14.0	97 34.8	122 43.7	17 6.1	189.082(4) .000***
학교규정인지의 지속적 적용	279(N) 100%	15 5.4	52 18.6	119 42.7	83 29.7	10 3.6	152.523(4) .000***
학교규정인지의 엄정 적용	279(N) 100%	2 0.7	11 3.9	91 32.6	151 54.1	24 8.6	290.588(4) .000***
학교규정인지의 전체 이행	279(N) 100%	2 0.7	5 1.8	91 32.6	153 54.8	28 10.0	303.491(4) .000***

학교규정에 대한 기대성향을 분석하면 [그림 9]에서와 같이 55.4%의 학생이 학교규정을 인지하는 것이 학교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P < .001$), 그리고 53.2%의 학생은 입학 시 규정인지교육 실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그림 9] 학교규정에 대한 기대성향 분석

연구대상 중 50.5%의 학생이 학교규정으로 인해 단정한 모습의 학교가 유지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9.7%의 학생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질서 있는 학교란 규정이 잘 지켜지는 체계의 학습 환경을 뜻하며, 이는 학생이 학교적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규정을 긍정적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P < .001$). 그리고 33.4%의 학생이 질서를 갖춘 학교가 모든 면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24.8%의 학생이 중간 정도의 반응을 보였고, 41.7%의 학생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그리고 77.3%의 학생이 학생규정의 개정을 기대하고 있으며, 7.9%의 학생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그러므로 기존의 학교규정에서 일부는 수요자의 건전한 의견 반영 및 시대적 변화가 가미된 현실적인 학교규정으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학교규정의 구성내용에 대해서도 47.2%의 학생이 현재의 복잡한 학교규정을 요약했으면 기대하고 있다($P < .001$).

또한, 49.8%의 학생이 학교규정이 특정장소에 지속적 게시되기를 희망했으며, ($P < .001$), 33.3%의 정기적인 규정적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24.0%의 학생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는 학교규정이 공개된 장소에 늘 접할 수 있는 배치를 원하고 있으며, 매일 자주하는 검열보다 정기적인 규정지도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 규정의 운영 면에서 재검이 필요하다.

끝으로, 62.7%의 학생이 학교규정이 정확히 적용되어 선의의 피해가 없었으면 기대하고 있으며($P < .001$), 64.8%의 학생이 학교규정을 모두가 잘 실천했으면 하는 반응을 보였다($P < .001$). 따라서 명확한 학교규정 운영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적용이 되고, 학교구성원 전체가 실천적 생활에 동참한다면 학교분위기의 쇄신은 물론 학교생활적응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교사용 설문지 분석

본 설문지의 목적은, 학교규정에 대한 연구과정에서 실무담당자인 생활지도교사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생활태도와 위반행위 시 지도방법, 학교규정을 어떻게 적용·운영하는지, 학교규정에 대한 일반교사의 인지실태 및 호응도를 파

악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규정 인지교육의 심화적용 여부를 예측하고, 학교생활적응력의 전략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고자 했다.

1) 본 설문은, 조연자인 담당교사들의 의견청취와 함께 학교규정 인지교육 적용에 실제 학교현장의 요구 반영과 객관적, 중립적인 실제 접근을 통해 심층 분석을 하고자 하였으며, 인지학습 강화를 위한 전개과정의 선행조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전·후 비교차원의 변별적인 발문보다는 각 영역별 세부적인 발문을 하였으며, 생활지도교사들의 개별·집단성향, 학교현장에서의 규정의 활용 여부, 그리고 지도 시 세부규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측면의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의 3개 영역으로 나누었다.

① 일상에서의 자기 성향

본 영역이 질의문항은, 생활지도교사들의 개별 및 집단의 성향을 파악하고, 담당자의 자질 및 학교규정의 실천의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IV-11> 일상에서의 자기 성향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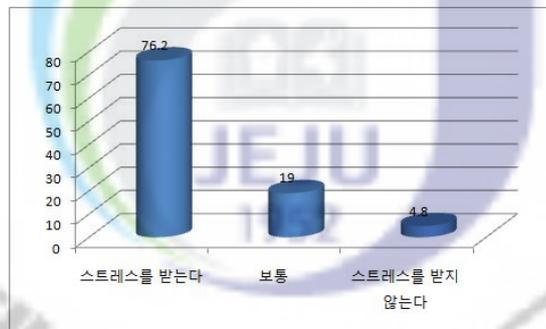
인식 사항	질의 문항(교사용 설문)
규칙준수에 대한 인식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규칙을 중요시 여긴다.
사회적 역할의 인식	내가 모범적이지 못하면 타인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변화에 적응 인식	여러 가지 상황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학생지도에 따른 스트레스	학생들이 혼화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기절제에 대한 인식	타인의 실수는 인정하되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다고 느낀다.

위 설문은, 교사의 규칙준수 정도, 사회적 생활에 타인의 인정 여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려는 인식 정도, 학생지도 불응 시 교사의 스트레스 여부, 교사의 자기절제 정도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IV-12> 일상에서의 자기 성향 분석

인식사항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chi^2(df)$
규칙준수에 대한 인식	21(N) 100%	1 4.8	- -	2 9.5	13 61.9	5 23.8	16.905(3) .001***
사회적 역할의 인식	21(N) 100%	1 4.8	- -	3 14.3	12 57.1	5 23.8	13.095(3) .004**
변화에 적응 인식	21(N) 100%	1 4.8	- -	3 14.3	14 66.7	3 14.3	19.952(3) .000***
학생지도에 따른 스트레스	21(N) 100%	- -	1 4.8	4 19.0	15 71.4	1 4.8	25.286(3) .000***
자기절제에 대한 인식	21(N) 100%	1 4.8	1 4.8	12 57.1	6 28.6	1 4.8	22.571(4) .000***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일상적 자기성향 영역을 살펴보면 [그림 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응답자 중 76.2%의 교사가 학생들의 혼화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할 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따라서 이러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고 서로 간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림 10] 학생지도에 따른 스트레스(교사)

생활지도 담당교사 중 85.7%의 교사가 규칙준수를 중시하는 걸로 나타났으며, ($P < .005$), 80.9%의 교사가 자신이 모범적이지 못하면 타인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응답하고 있다($P < .01$). 그리고 80.1%의 교사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려 했는데($P < .001$), 이는 늘 변화를 수용하고 학교환경을 변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보아지며, 향후 학교규정의 제·개정 및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시사하

고 있다고 본다.

끝으로, 33.4%의 교사가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P < .001$), 이와 같은 자신에 대한 엄격함은 일반교사와는 다른 차원의 학생생활지도에서 요구되는 특성으로, 생활지도의 확고한 교육철학을 갖춘 울곧은 사교의 소유자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②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

본 영역이 질의문항은, 생활지도교사들이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 실천의지 및 집단교육, 조직체계 및 운영사항, 효과와 이행의 가능여부를 가늠하고자 하였다.

<표 IV-13>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 영역

인식사항	질의문항(교사용 설문)
학교규정의 필요성	학교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규정의 실천의지	학교규정이 필요한 걸 알고 있지만 실행이 쉽지 않다.
학교규정의 교육정도	학교규정이 너무나 번잡할 것 같아서 교육하지 않는다.
학교규정 인지교육 경험	학교규정 전반에 대한 인지교육을 실시해 본 적이 있다.
학교규정의 중요성	학교규정의 중요성을 알지만 때로는 무시하고 지나친다.
학교규정의 게시	학교규정을 일정기간 동안 지정장소에 게시한 적이 있다.
학교규정과 조직체계	학교규정에 의해 학교가 조직화 · 체계화되는 일은 중요하다.
학교규정의 효과성	학교규정 때문에 학생들이 그릇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본다.
학교규정의 이행 가능성	학교규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본다.
학교규정의 필연성	학교규정이라도 있어서 학교의 위계질서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위 설문은, 규정의 필요성, 규정이행에 대한 의지, 학교별 규정 인지교육의 실시 여부, 규정의 중요 정도 및 경향, 규정의 게시 여부, 규정에 의한 학교체계 여부, 학생들이 그릇된 생각을 앎는 것은 학교규정 때문인지, 규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비율인지, 교사가 규칙을 중시하는지 등에 대해 파악하고자 했다.

<표 IV-14>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 분석

인식사항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chi^2(df)$
학교규정의 필요성	21(N) 100%	1 4.8	- -	- -	13 61.9	7 33.3	10.286(2) .006**
학교규정의 실천의지	21(N) 100%	1 4.8	2 9.5	1 4.8	16 76.2	1 4.8	41.619(4) .000***
학교규정의 교육정도	21(N) 100%	5 23.8	6 28.6	1 4.8	9 42.9	- -	6.238(3) .101
학교규정인지교육 경험	21(N) 100%	- -	10 47.6	3 14.3	7 33.3	1 4.8	9.286(3) .026*
학교규정의 중요성	21(N) 100%	1 4.8	5 23.8	5 23.8	10 47.6	- -	7.762(3) .050*
학교규정의 게시	21(N) 100%	2 9.5	9 42.9	2 9.5	6 28.6	2 9.5	9.714(4) .046*
학교규정과 조직체계	21(N) 100%	1 4.8	- -	1 4.8	16 76.2	3 14.3	29.857(3) .000***
학교규정의 효과성	21(N) 100%	1 4.8	2 9.5	4 19.0	11 52.4	3 14.3	14.952(4) .005**
학교규정 이행 가능성	21(N) 100%	1 4.8	7 33.3	2 9.5	11 52.4	- -	12.333(3) .006**
학교규정의 필연성	21(N) 100%	1 4.8	1 4.8	4 19.0	10 47.6	5 23.8	13.048(4) .011*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그림 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응답자 중 90.5%의 교사가 학교규정에 의하여 학교가 조직화·체계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공감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림 11] 학교규정과 조직체계에 대한 인식(교사)

위에서, 95.2%의 교사가 규정의 필요성을 중시하는 걸로 나타났으며($P < .01$), 81.0%의 교사가 규정을 알지만 실행은 쉽지 않다고 응답했는데($P < .001$), 교사의 규정이행에 대한 의지는 대부분 확고하지만 이행에 어려움을 내비치고 있다.

이는 규정에 입각한 위반학생 지도 시 학생이 잘못을 수용하지 않고 저항할 때, 규정 적용여부를 고민한 경우라 보아지며, 규정적용의 절차과정 및 이후에 이의 제기, 여러 가지 심적 부담 및 갈등에서 기인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의 스트레스를 넘어서, 불가항력적으로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집단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엄정하게 적용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학생·교사 간이 어려운 갈등단계에 이르기 전에, 학생들에게 학교규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키고 학생들로 스스로 인지토록 하여 규정위반이 되지 않게끔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만일 규정적용이 되더라도 자신의 평소 규정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주위의 대부분 학교구성원들이 위반 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수궁하는 분위기에서는 저항할 수 없으며, 후문이나 루머 등의 집단적 저항도 누그러질 것으로 본다.

한편, 42.9%의 교사가 규정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으며, 38.1%의 교사가 제반규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7.6%의 교사는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것은 위반 시마다 즉흥적인 개별지도에 머물거나 전체대상의 인지교육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아예 규정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가하면, 47.6%의 교사가 규정을 중시하면서도 때론 무시하는 걸로 나타났고($P < .05$), 38.1%의 교사만이 규정을 게시한 것으로, 52.4%의 교사는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는 학교현장에서 규정적용이 미온한 실정이며, 규정 게시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에 규정인지의 실천이 다시 한 번 강조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66.7%의 교사가 학생들이 그릇된 생각을 앎는 것은 학교규정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P < .01$), 이는 담당자로서 자기업무의 성공적 기대심리도 작용할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질서 있고, 단아하면서도 행복한 학교에 대한 기대심리기 더 크게 작용했으리라고 본다. 즉, 개인이 아닌 집단의 의지를 기대한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규정에 의한 학교체계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임을 대다수의 교사가 동의하고 있으며, 학교규정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일탈행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규정의 인지야말로 학교의 안정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가 되며, 이를 잘 활용하면 집단의 이익과 안녕은 물론 학생들의 학교현실에 잘 적응하여 생활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끝으로, 52.4%의 교사가 규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학생은 많지 않다고 보았으며($P < .01$), 71.4%의 교사가 규칙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그러므로, 실천학생이 줄어들수록 학교중심이 학교규정 인지교육 실천이 필요하고, 전체 학교구성원이 규칙을 중시하는 새로운 학교문화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③ 학교에서의 상황적 특성

본 영역이 질의문항은, 앞에서 제시된 두 개 영역의 질의내용이 연구에 충족되어도 학교에서의 주어진 상황들이 어떤 교육적인 환경과 특징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보완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성하였다.

<표 IV-15> 학교에서의 상황적 특성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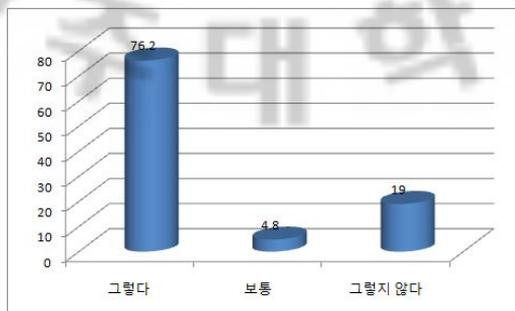
인식사항	질의문항(교사용 설문)
학교규정의 적용정도	학교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을 엄정히 적용한다.
학교규정의 교육시간 할애	학교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학교규정 적용의 형평성	학교규정이 모든 학생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학교규정의 강화	학생들이 무질서할 때 학교규정 강화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학교규정의 인지미흡	학생들이 학교규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
학교규정의 즉흥적 지도	규정 적용보다는 그 때 상황에 따라 지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학교규정준수 교사 반응	학생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일반교사들은 신경 쓰지 않는 편이다.
학교규정의 자율적 운영	학생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선도단(봉사단) 등을 운영한 적이 있다.
학교규정의 제·개정 의지	학교규정의 사례를 이웃 학교 간 정보교환·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학교규정의 교직원 연수	규정인지는 학교구성원 몇몇이 아닌 전체의 이해와 연수가 필요하다.

위 설문은, 학교규정의 적용정도, 교육시간 할애, 형평성, 강화, 인지미흡, 학교규정준수의 교사 반응, 자율적 운영, 학교규정의 제·개정 의지, 학교규정의 교직원 연수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IV-16> 학교에서의 상황적 특성 분석

인식사항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chi^2(df)$
학교규정의 적용정도	21(N) 100%	1 4.8	8 38.1	5 23.8	7 33.3	- -	5.476(3) .140
학교규정 교육시간 할애	21(N) 100%	5 23.8	13 61.9	3 14.3	- -	- -	8.000(2) .018*
학교규정 적용의 형평성	21(N) 100%	1 4.8	5 23.8	9 42.9	5 23.8	1 4.8	10.667(4) .031*
학교규정의 강화	21(N) 100%	1 4.8	4 19.0	2 9.5	11 52.4	3 14.3	14.952(4) .005**
학교규정의 인지미흡	21(N) 100%	2 9.5	2 9.5	1 4.8	16 76.2	- -	29.476(3) .000***
학교규정의 즉흥적 지도	21(N) 100%	- -	1 4.8	2 9.5	18 85.7	- -	26.000(2) .000***
학교규정준수 교사 반응	21(N) 100%	- -	4 19.0	5 23.8	9 42.9	3 14.3	3.952(3) .267
학교규정의 자율적 운영	21(N) 100%	- -	5 23.8	1 4.8	11 52.4	4 19.0	10.048(3) .018*
학교규정 제·개정 의지	20(N) 100%	- -	- -	1 4.8	12 57.1	7 33.3	9.100(2) .011*
학교규정의 교직원 연수	21(N) 100%	- -	- -	1 4.8	10 47.6	10 47.6	7.714(2) .021*

위에서 살펴보면, [그림 12]에 제시한 바와 같이 76.2%의 교사가 학생들이 학교규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P < .001$), 앞으로 학교가 학습자중심의 흐름에 맞춘 인지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은 규정인지로 학교생활에 적극 참여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12] 학생들이 규정인지 미흡으로 인한 규정위반(교사)

그리고, 33.3%의 교사가 학생의 규정위반행위 시 규정을 엄정 적용하는 걸로 나타났고, 42.9%의 교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85.7%의 교사가 '규정교육에 시간할애가 안되어서 교육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응답한 걸로 봐서는, 교사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P < .05$). 이는 평소 규정인지교육의 부재, 융통성등 느슨한 규정적용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방치됐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28.6%의 교사가 학교규정을 형평성 있게 적용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28.6%의 교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P < .05$), 66.7%의 교사가 학생들의 무질서할 때 규정강화를 생각해봤다고 하였다($P < .01$). 이는 평소 형평성 있는 규정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학교현장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학교규정이 무력해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85.7%의 교사가 규정적용보다는 즉흥적 지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P < .001$), 규정인지교육이 안되어서 위반하는 행위는 학교가 의무사항을 시행하지 않고 외면한 결과라고 보아지며, 위반행위 시만 규정을 적용하는 식의 즉흥적 지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한편으로, 57.2%의 교사가 학생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일반교사들의 관심이 없다고 반응하였으며, 71.4%의 교사는 자율선도단(봉사단)을 운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P < .05$). 즉, 학생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일반교사들은 지도나 개입을 잘하지 않는 편이며, 생활지도교사의 몫으로 남겨진 경우라고 보아진다. 이런 현실일수록 학교규정이 엄정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90.4%의 교사가 규정의 사례를 이웃 학교 간 정보교환·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P < .05$), 95.2%의 교사가 규정인지는 학교구성원 몇몇이 아닌 전체의 이해와 연수가 필요하다고 반응하였다($P < .05$). 따라서 단위학교별 규정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 공통되는 규정사항은 공유하고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끔 부분 개정이 필요하며, 학교규정은 몇몇 담당자의 소유가 아닌 학교구성원 모두가 공유해야 할 필수사항이기에 연수를 통한 이해와 실행이 절실하다.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은 교육법규에 의거, 고시한 국가수준의 ‘기준’임을 명시,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학습자중심 교육과정,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하는 교육과정,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라는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즉,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습자가 중심축이 되어 교육과정의 내용을 결정하고, 교수의 세 변인을 교사, 학생, 그리고 학습자원으로 본다면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수업을 전개하는 교육과정이다(길형석, 2002). 또한 학습자중심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 실제 생활과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중심 교육과정과 학습자의 인격존중, 자율적 인간을 강조하며 자아실현인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중심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내용으로서 기본개념과 교육방법으로서 탐구학습을 강조하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관점 등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모든 교육과정은 어느 정도 학습자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어떤 교육과정이든지 교육의 대상인 학습자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민용성, 2003).

그런데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학생의 역할은 매우 수동적이며,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지도와 지시, 감독을 받고 있는 경향이 강하며 학생 스스로 학교생활에 대해 인지하고 참여하는 학습자 중심적인 내용과 요소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응하는 학습자 중심적인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며, 학습자가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인지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교육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학교생활이 가능한 분위기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 스스로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일탈행동을 학교규정인지 강화를 통해 최소화하고, 사전 예방차원의 자기통제로 학교생활에 익숙하도록 실천함으로써 학교생활적응력을

증진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규정인지 수준 및 현행 체제의 실태 파악을 위해 기초설문을 실시, 설문에서 요구된 학교규정항목에 학생들의 반응 검토 및 분석으로 인지교육수준을 설정하였다.

둘째, 학교규정인지 적용 과정, 학교생활적응력 증진 등의 전략 모색을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학교행사와 연계하여 규정인지교육을 강화하였다.

셋째, 다양한 발문의 학생·교사의 추후 설문으로, 학교규정 인지교육 후 생활의 변화, 학교생활적응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연구에 사용된 변인을 측정하고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넷째, 규정인지교육이 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향상과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대상 외에도 이웃학교 생활지도 담당교사와의 인터뷰로 규정인지 수준, 규정 적용 방법 등의 조언을 청취하여 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동시에 효율적인 규정운영으로 학교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아울러 학교규정인지가 어려운 현행 체제, 규정위반에 대한 규정적용의 수위, 사전 학교규정인지교육 여부 등 학교규정인지교육 시행의 필요성을 교육정책차원의 개선을 요구하는 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은 무질서, 나태, 해이 등의 기초질서의식이 부족한 학교현장에 학교규정 인지교육을 강화하여 규칙준수의 질서 있는 삶을 정착시킴은 물론 학생 스스로 규정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자제하도록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향상을 꾀하고자 하였다. 사전에 학생의 내적욕구와 규정인지교육이 적절히 부합된다면, 학생은 규정위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자제하게 되어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결론

가. 학교규정 인지교육과 생활적응력의 상관성

최근 사회가 복잡해지고 정체성 혼란이 가중되면서 학교현장에서도 일부 학생들은 학교생활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여 학교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실정이다.

그들은 학교생활에서 점차 회의적 사고와 수동적 태도로 생활자세가 흐트러지고 있어 학습태도, 교우관계, 자아존중감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활기찬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실제 다음과 같은 학교현장의 변화가 요구된다.

첫째, 학교규정 내용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하여 활성화시킬 때, 새로운 학교문화 창출은 물론 학교생활적응력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학교규정 인지도교육 또는 등교지도 시 질의과정에서 '규정개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기대치가 '규정준수' 못지않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사지도 중심체제의 경직된 기존 학교규정에 대한 변화 요구의 목소리로 해석되며, 이를 위해 학교구성원 모두의 규칙과 약속이 담겨있는 새로운 학교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아진다.

좀 더 구체화시키면, '학교규정인지'는 최종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학교생활적응력을 돕기 위함이다. 세상의 패러다임이 변하다 보니 학교적응문제가 발생했을 뿐이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가 변했다고 해도 교육의 목적이 바뀔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학교규정의 궁극적 목적은 교육의 목적과 맥을 같이하며, 학교생활적응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한다.

그런 까닭에 학교규정이 불편하고 골치 아픈 별도의 고민거리가 된다면 교육의 본질적인 개념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규정은 학교구성원이 따를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규정을 지켜야 하는 학생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학교규정은 우리의 학교생활에, 교육환경과 접목되어 체질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규정이 학교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거부감이 있지는 않은지, 얼마나 실용적인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교사·학부모 공동체의 합의에 의한 학교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학교규정을 어떻게 변화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학교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반응은 민감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민감성이 학교문화의 새로운 활력소로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로 자리매김하여, 생활적응에도 긴밀한 상관관계에 놓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앞으로의 학교생활적응은 도덕성 및 준법성이 내재화되어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수범적인 학교생활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최근 들어 강력범죄, 성범죄 등 준법정신이 해이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모방범죄는 물론, 이를 접하게

된 일부 학생들은 심신의 순수함마저도 훼손되어 학교생활태도가 부정적으로 바뀐다거나 일상이 피폐함으로 찌들고 무기력해져 올바른 인성함양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교내질서 유지와 민주적인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규정 준수는 기본조건이며, 향후 사회적응에도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다.

흔히 ‘규정 준수’를 떠올리면, 형식적 전례의 과정이나 각박한 정서로 비취질 수 있지만, 규정은 한 순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일상에 적용되면서 점점 강화되는 신념과도 같은 것이다. 사실 규정적용에 취약한 것이 학생이다.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기본적인 자기관리도 못하고 있든지, 신뢰할 수 없는 의도적인 행동을 하는, 바로 그런 것에 취약한 존재이다. 이에 교사들은 다만 주어진 규칙(rule)에 따라 정직한 노력을 하게끔 지도할 뿐이다. 그렇다고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면, 그들은 흉내만 낼 것이고 그럴수록 학교는 더 위태롭게 될 것이다. 규정을 완벽히 숙지한다 하더라도, 실제상황에서의 판단은 학생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가 기초생활 질서, 생활법규 준수 등 공공의식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야 하며, 학교별 자체실정에 맞는 지속적인 학교규정 인지교육 및 학칙중심의 교풍이 조성되어야 하겠다.

셋째, 학생들의 정서적인 혼란과 무질서한 행동유형의 사전 파악으로, 보다 세분화된 지도가 이뤄질 때 생활적응력은 증대될 것이다. 최근 사회구조 변화의 불확실성, 성범죄의 증가, 인권보호정책 등으로 집단 내에서도 조직 간의 제어기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원칙과 규정을 적용하는 합리적인 조직만이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학교도 제도적, 기술적으로 구축된 제어시스템이 요구되며, 다양하고도 세분화된 전개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각종 정보전달의 익명성, 신속한 전파로 인해 무형의 정보사회에 비윤리적 언행이 확산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학교규정의 원초적 준수는 미래정보사회 질서에도 새로운 이슈를 제시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오늘의 학교규정이 향후 정보사회의 윤리준수를 유도하고 정의사회구현을 지향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현재의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학교규정을 실천하고 준수한다면 미래사회의 적응에 보다 성숙한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

나. 생활적응력의 증진 및 지원 대책

최근의 교육은, 과거와는 달리 교육제도의 민주화 및 교사·학생·학부모의 교육공동체 담론이 상당부분 성숙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함께 학교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었는데,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고 학업에 치중해왔던 전통적 학교의 형태에서 벗어나 교사·학생의 관계를 가장 활발한 상호작용 체계이자 사회적 관계로 인식하게 되었다.

즉 학교는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교육적 욕구를 다루는 학습의 장이며, 그 기능을 위해서는 학생·가정·학교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사회환경으로의 변화에 필연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제도·규정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학교제도·규정의 전제야말로 학교생활적응력은 물론 사회적 기능수행을 돕는 중요한 일이며, 이러한 역할이 바로 학교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인권이 침해되고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만 사용되는 순간 입법취지는 사라지고 무소불위의 폭력으로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준다. 그 예로 그린마일리지 제도처럼 체벌을 없애서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취지가 있었지만, 오히려 학생들은 벌점을 면하기 위해 차라리 체벌을 택하는 등 심각한 교권불신과 다른 차원의 인권침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법이나 제도로 획일화, 형식화하는 방법만으로는 교육의 민주화와 교육공동체의 성숙을 가져올 순 없다. 학생규정의 운영 역시, 학생을 위한 비전이 제시되는 현실적인 방안이 되어야 하며,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보듬고 살필 줄 아는 지혜가 담겨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제도와 정책 또한 학생의 의견수렴 및 인지교육을 통해 학교구성원 간에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거듭나야 하겠다.

1) 인지교육측면 : 학교규정의 민주적 운영과 사전 인지교육과정 전개

학교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학칙에 의거, 학생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민주적인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써 학생보호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규정위반에 대해서도 교육적 측면의 지도가 요구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자치적응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규정에 대한 사전 인지교육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환경 적응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학습요소이며, 학생들 역시 이를 요구하고 알 권리가 있으므로 반드시 익히고 실천함으로써 성숙한 학교생활의 질서의식을 갖추어야 하겠다. 학교에 따라서는 시간적 활용이 어려울 경우도 있을 것이나 '규정인지교육 주간'을 설정하고, 그 주간에 매일 조·종례 등의 틈새활용을 한다면 지속적인 인지교육도 가능할 것이다.

2) 학교규정운영 측면 : 학교규정 게시 및 일관된 적용으로 학칙의 자율 준수

학교의 게시공간을 활용하여 일정기간(3~5월) 중 학생규정 요약본을 게시하고, 사전 규정인지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초기 위반학생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대한 인지교육을 강화시켜 재발을 방지한다. 재발할 경우는 학생인격을 우선 고려하고,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규정위반 동기, 이전의 지도과정 등을 참작하되 학교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일관적인 적용을 한다면 객관적이고도 균형 있는 처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평소 학생 스스로 규정을 실천할 수 있는 '자율실천 테마'를 선정하되, 자율실천을 통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어야 하겠다. 예를 들어, 해당 학교의 옛터의 지명(陽地)을 인용하여, 전통으로 이어온 실천적 학생표상(陽地人)으로 승화시켜 '양지인의 멋'이라는 테마를 선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할 것은, 질서와 준법의 정신이 확립이다. 학생회 임원을 중심으로 자율적 절차에 의한 「양지인의 다짐」이라는 '실천적인 생활규칙'을 마련하고, 전체조회 시 학생회 중심의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결의문 낭독과 함께 전체의 실천의지를 표방하면, 그에 따라 연중 자율적인 실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그 밖에도 평소 학생 스스로의 자율적 규정이행을 위해 별도의 선행을 한 학생은 모범생으로 추천·선발하거나 학년 말에 학생규정의 자율실천 실적을 공모하여 우수사례 발굴 시 포상한다.

또한 '학생자율실천단'을 조직·운영함으로써 질서, 양보, 봉사 등 학생들의 책무성을 높이고, 교사의 지도조언으로 일탈행동을 예방하여 내실화되도록 실행되 학교규정은 올바른 학교 정착이라는 근본적인 역할의 접근이 중요하다.

3) 생활지도교사 측면 : 담당교사의 교육철학 및 실천적 의지의 내실화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인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학교공동체 의식함양, 책임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규정인지 실천 활동을 펼치는 게 바람직하다. 학생 뿐 아니라 학교구성원 모두의 의지, 성실성, 잠재적 능력 등이 필요하다. 여기에 학생들의 보람차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긴밀하고도 유기적으로 지도하려는 교사의 교육철학이 내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생활지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문제해결능력, 상담경력 등의 자격을 갖춘 생활담당교사의 배치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생활지도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풍부한 경험과 어느 장소에서든 현장 지도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권·인성지도와 더불어 생활지도 직무연수의 이수, 학교 간 정보교환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현장에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담당교사의 전문성이 신장·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생활지도 교사와 모든 교사가 마주하는 짙은 미팅(10분)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학교정규 수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매주 토요일 종례 후 지난 1주 동안 학생들의 부적응 요인을 발표하거나, 수정·보완·강화대책 중 특이사항 한 가지만이라도 제시하고 공유한다면 알차고 효율적인 학교규정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인성지도와 연계한 ‘학교규정인지 교직원 연수’를 분기별 1회 실시, 전문성의 신장을 위해 제반규정을 교루 적용한 연수가 필요하다.

4) 행·재정적 지원 측면 : 현안과제 해결위한 청소년 전담기구 설치

요즘은 학생들이 스스로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하는 건강한 인성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것은 수많은 복잡한 구조의 학습으로 인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인성은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음에서 비롯된 듯하다. 학력신장의 다양한 지름길은 열렸으나 인성측면의 교육이 미흡하다는 생각이다.

신뢰와 감동이 넘치는 교육구현과 학교교육이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방학 중 학생·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규정인지교육 관련 연수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통해 학교생활지도의 현행 문제점을 제시하고 진단하며, 서로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여 학교생활적응의 방향을

가능하고 설정함으로써, 더욱 새로운 학교환경을 가꾸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단위학교의 자생적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며, 생활지도 담당교사 혼자서 학교규정에 따른 제반 교육과정의 진행과 처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교육청의 인사·재정적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인사측면에서, 도교육청에 상주하는 학교생활지도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학교생활지도 업무지원 전담부서로, 일선학교의 요청에 수시로 지원 가능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생활지도 전담부서여야 하겠다.

현재 도교육청의 중등교육과에서 맡은 학생관련 업무는 상급기관 관련 공문처리, 실태조사 및 현황보고, 자체계획 업무시행, 학생축제 활동 및 계도·홍보차원 등이 보편적 업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청 직속의 청소년지원 전담부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한편 교육청이 아닌 타 기관인 경찰청의 부서 중에는 '여성청소년계'라는 전담팀이 있다. 여성인권보호차원의 업무 전반과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관련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다. 그 업무 중 청소년 관련 내용으로는 청소년 형사사건뿐 아니라 우범지역 상시 현장순찰로 길거리 계도, 청소년 행사 질서 및 선도업무지원, 청소년 비행예방 대책 등에 주력하는 면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교육청이 아닌 유관기관에서도 청소년 전담기구 운영 등에 많은 자원과 인력을 풀가동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청은 적은 수의 장학담당자 약간 명이 전도 초·중·고등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학교규정을 정립하고, 전체 구성원이 이를 이해하고, 지켜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우리 사회가 교육에 대한 진지한 관심으로 학교현장의 현안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며, 행·재정지원에 인색하지 않는 거시적이고도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곧 객관적, 진취적인 학교문화 조성의 지원과 학교규정운영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청소년을 미래사회의 초석으로 이끄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됨은 자명한 일이다.

다.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일부 지역학교에 대한 기준으로 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표본수가 미비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연구가 이뤄져야 하며, 점차적으로 전국단위로 조사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학교부적응 학생이 부쩍 늘어나 학교현장의 시급한 과제로 급부상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학교가 이를 외면하거나 실제 예방적 차원의 운영이나 연구학교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나 학교규정인지의 책무성과 형평성이라는 중립적 원칙에 입각하여 학교현장에 적용하고 새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한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교규정인지교육이 학교현장에 정착된다면 다음과 같은 역할 수행으로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첫째, 현행 학교규정인지가 취약한 학교현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되어 학생들의 자주적 규정이행 및 질서의식으로 즐겁고 명랑한 학교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둘째, 규정인지는 단순암기식 규율이 아닌 학생들의 의식에 내재되어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생활 속에 규범적 요소로 작용되어 질서생활을 실천함으로써 행복한 학교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학생생활과 밀접한 학교규정의 계도 및 사전 학교규정인지교육 등 명확한 제시를 통해 규정을 강화하고 준수함으로써, 위반행위가 대폭 축소되고 이로 인해 안정적 학교생활이 영위되어 학교생활적응력은 증진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곽덕훈(2008). "초·중·고 컴퓨터 교육 체계 개선 방안". 정보과학회지. 제26권 제1호.
- 권낙원(2000). "학습자 중심 교육의 성격과 이론".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권 제1호.
- 권준모(2000). **심리학과 교육**. 서울:학지사.
- 길형석(2002).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권 제1호.
- 김창환(2005). "일반계 고등학교의 컴퓨터교과 교육내용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기정(2002). 청년기 학생들의 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한 자기수정기법의 탐구.
- 김병성(1991). **학교의 사회심리학**. 서울:양서원.
- 김선남(1996). **개인성장과 관계발달 가족 기능화**. 서울: 중앙적성.
- 김현근(1994). 피아제 열린 교실연구. 응용학회지. 제2집 제1호.
- 민용성(2003).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의 내용선정 준거 탐색 및 적용".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제3권.
- 박미희(2003).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학교 상담 : 초등학교상담연구회.
- 변기연(2004). 학교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력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발연구: 호남대학교.
- 송인섭(1990).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양서원.
- 주현수(2008). "컴퓨터 교육과정 개정안 분석 및 개선 방안". 건국대학교.
- 이재창(1992). **자기성장과 인간관계**. 서울:한국가이던스.
- 이화현 외(2008). "문제해결을 위한 ICT 활용능력 분석: 문맥 속에서 대학생의 기능 및 논리능력 학습하기". 제9권 제3호. 한국컴퓨터교육학회.
- 정영윤(1990). 적응강화를 위한 집단상담. 한국가이던스 집단상담 프로그램.
- 조대봉(1992). **인간행동의 이해와 자아실현**. 서울:문음사.
- 천옥희(2004). 초등교사의 체벌 규정 인지도 및 적용 실태 연구. 석사학위논문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안.
- 한국교육개발원(1984). 청소년의 자아개념 및 가치관 확립. 프로그램 개발연구원.
- E.J.Wadsworth(1991). **피아제의 인지발달론**. 정위태 역. 서울:배영사.
- Bloom, B.S. (1976). *Human Characteristics and School Learning* McGraw-Hill Book Co.
- Clark, B. R. (1962). *Educating the Expert Society* San Francisco : Chandler.
- Coleman, J.S. (1961). *The Adolescence Society* N.Y. : The Free Press.
- Marzano, R. J. (1998). *A theory-based meta-analysis of research on instruction*. Aurora, CO : McREL. www.mcrel.org/PDF/Instruction/5982RR_InstructionMeta_Analysis.pdf.*
- Tishman, J. E. Jay & D. N. Perkins. (1992). *Teaching thinking dispositions: From transmission to enculturation*. Cambridge, MA: ALPS.

- Eisner, E. W(1985). *The Educational Imagination: On the Design and Education of School Programs*. New York: Macmillan.
- Nicholls, A., Nicholls, A. H(1978). *Developing a curriculum : A practical guide*. 2nd eds., London : Gorge Allen & Unwin.
- Taba, H(1962). *Curriculum 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 Withall, J(1985). *Teacher-centered and Learner-centered Instruction*. In Husen, T. & Postlethwaite, T. N(Eds.),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NY: Pergamon Press Ltd.



<Abstract>

Study on Finding Ways to Improve Adaptability Through Teaching About School Regulations

Hyuk-jin, Kwon

Specialized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at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Jeon, Ko

Based on Education Regulations, the amendment of the 7th curriculum offers the education that considers a sense of diversity and a learner-centered learning. Add to these, it also cares for the education that is fulfilled by the cooperations between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and the education that manages and maintains the quality of teaching and learning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 short, the learner-centered curriculum is able to be referred to as 'integrated educational course'.

However, if looking at a school life of a student, it appeared to be very passive and rather strongly controlled by instructions, orders and supervision. After all, the reality is that very little of students are aware of the existence of the learner-centered elements at school. But, with the amendment of the 7th curriculum that pursues the life based on learners which indicates that the students actually participate in school activities by themselves as they acquire the general factors on the school life. The curriculum provides the educational course that makes students willingly join the school activities as the agent of the education which led to the possibility that there would be the learner-centered school life. As a result,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to find ways to have students minimize their acts of deviance by themselves through giving them the education on the

school regulations, and to improve their school adaptabilities by self-control in advance. The study was conducted as follows. First, I conducted a basic survey to identify the awareness of school codes and the status of current system. Then I set the level of awareness education based on the review and analysis on students' reactions to school code entries required in the survey. Second, I investigated previous literature to devise strategies for adapting process of awareness of school codes and improving school adaptation. Also I reinforced the code-awareness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school events. Third, based on follow-up surveys on students and teachers using various questioning, I measured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and analyzed the credibility in order to identify the changes in school life and the adaptation of school after code-awareness education. Fourth,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code-awareness education and improved adaptation of school, I complemented any shortcomings of this study by interviewing teachers in charge on the level of code-awareness, how to adapt the code, how much students are adapted to school and any other related matters, besides literature research and the previously mentioned survey on the study subjects.

Along with this, the study also sought for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adaptabilities to school life and the school regulations. Did the study not only improve the adaptability by conducting an efficient management on regulations, but also tried to present the necessity for the school regulation recognizing education by explaining how difficult it is to teach students about the school regulations at present, how the violations to the regulations should be handled, and how important it is to conduct the education on the school regulations in advance. In the end, the study wanted to be in part of improving the educational policy.

300 students at A high school, Seogwipo-si, Jeju and 21 guidance counselors at six high schools were objected to survey and interview. The measuring apparatus for the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relevant references and previous researches. Based on what was gained from the investigations the first questionnaire was written to see how much students and teachers were aware of the school regulations before the school regulation recognizing education was performed. With advices from the professor, the final draft of

the questionnaire after editing and supplementing was handed out to the students and the teachers. The descriptive statistic was applied to the validity of the measuring apparatus after the complete enumeration.

The first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questions on one's characteristics in daily life, awareness of the school regulations, and the situational features at school before the education for recognizing the school regulations was conducted. After the survey, the general education on the school regulations was carried out to the students, and to see changes after the application the second questionnaire was written and filled out.

The second questionnaire was to learn the changes on the awareness of the school regulations and expectations towards the rules after conducting the recognition education. Also, the guidance counselors at six local schools were asked for survey and interview. From the analysis on the first and second survey, the study tried to prove how recognizing the school regulations influences the improvements on the life adaptability.

Lastly, by strengthening the educations on school regulations at schools with disorders, indolences, and laxities, the study aimed to improve the adaptabilities to school life through establishing orderly life and making students control themselves before violating the regulations. If the internal needs of the students and the educations on the school regulations are properly corresponded to each other, it would be helpful for students to adapt themselves to school as they determine the question of violating the regulations⁴⁾

* This is the master's thesis which was submitted to the board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on August, 2010.

부록

(1차)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학교규정 인지교육을 통한 생활적응력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를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설문지의 문항들은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일 뿐 옳고 그르거나 좋고 나쁜 것이 없이 평소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것이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본 연구와 후속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됨은 물론 학생들의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연구에 협조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연구자 : 권혁진(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

* 문의처 : TEL. 064-742-9328, H-P 010-7270-9328 *

아래 문항들은 일상에서 드러나는 귀하의 성향이나 인식, 상황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보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다섯 가지(5칸척도)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대답을 하나 골라서 √표 하여 주십시오.

I. 일상에서의 자기 성향

문항	질 의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스스로 자아존중감이 있다.					
2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규칙을 잘 지킨다.					
3	나는 실제로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4	타인의 실수는 인정하되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다고 느낀다.					
5	나는 어렸을 때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해서 야단맞은 적이 있다.					
6	내가 모범적이지 못하면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7	나는 학교의 모든 변화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며, 늘 수동적이다.					
8	나는 선생님과의 대화나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9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훈화나 일방적 지도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10	나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싶어도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다.					

II.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

문항	질 의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교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나는 학교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다.					
3	나는 학교규정이라도 있어서 위계질서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4	나는 학교규정이 필요한 걸 알고 있지만 실천이 쉽지 않다.					
5	나는 학교규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모른다.					
6	나는 학교규정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					
7	나는 학교규정이 너무나 복잡할 것 같아서 알고 싶지 않다.					

문 항	질 의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8	나는 학교규정의 필요한지조차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9	나는 학교규정의 내용을 파악하지만 생활적응과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10	나는 학교규정을 파악하지 못하지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11	나는 학교규정 때문에 모든 일처리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12	나는 학교규정 때문에 그릇된 생각을 하지 않았다.					
13	나는 학교규정이 학급에 게시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14	나는 학교규정이 모든 학생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15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는 것은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까 우려해서이다.					

III. 학교에서의 상황적 특성

문 항	질 의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학교가 조직화되고 체계화하는 일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2	학교환경이 무질서하거나 시끄러워서 가끔 화가 날 때가 있다.					
3	학교가 높은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시시한 학교가 될 것 같다.					
4	학습 분위기가 확립되지 않아 무질서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5	떠드는 학생이 있어도 선생님의 지도가 거의 없는 편이다.					
6	선생님은 내 행동에 대해 언제나 준수한 모습을 기대하신다.					
7	선생님은 규정위반 등의 내 실수를 결코 이해하려 하지 않으신다.					
8	친구가 심하게 장난하는데도 규정은 엄격히 적용되는 것 같지 않다.					
9	나는 학교규정을 잘 몰라서 지도나 주의 등을 받은 적이 있다.					
10	나는 학교규정의 중요성을 알지만 때로는 무시하고 지나친다.					
11	나는 학교규정이 너무 엄하고 강제적이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2	나는 질서보다는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3	학교생활에서의 나의 행동은 집에서 하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14	학교규정은 선생님의 지도 시 가끔 들은 정도로 감지하고 있다.					
15	또래 친구들이 학교규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					

IV. 인적 사항

다음은 귀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 응답자 사항 >

1. 성 별 ① 남 () ② 여 ()
2. 학 교 ① 인문계고 () ② 전문계고 ()
3. 학교소재지 ① 제주도 () ② 서귀포시 ()
 ③ 제주도 읍·면지역 () ④ 서귀포시 읍·면지역 ()
4. 주 거 지 ① 제주도 () ② 서귀포시 ()
 ③ 제주도 읍·면지역 () ④ 서귀포시 읍·면지역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차)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학교규정 인지교육을 통한 생활적응력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를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설문지의 문항들은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일 뿐 옳고 그르거나 좋고 나쁜 것이 없이 평소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것이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본 연구와 후속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됨은 물론 학생들의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연구에 협조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연구자 : 권혁진(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

* 문의처 : TEL. 064-742-9328, H·P 010-7270-9328 *

아래 문항들은 일상에서 드러나는 귀하의 성향이나 인식, 상황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보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다섯 가지(5칸척도)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대답을 하나 골라서 √표 하여 주십시오.

I.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 변화

문항	질 의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학교규정 대해서 어느 정도 알 것 같다.					
2	나는 인지교육 후 학교규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한다.					
3	위반 시 지도는 '규정이 엄정 적용 때문' 이라고 생각한다.					
4	학교에서 무질서하게 생활하는 친구를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					
5	기본규칙을 이해한다면 규정위반은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6	모든 일에 규칙이 있어야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7	신중함으로 규정을 지켰다고 판단했는데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8	목표달성을 위해 일상적인 규정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9	학교규정은 공동의 약속인 만큼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10	학교생활에 성실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라 생각해 규정을 준수한다.					

II. 학교규정에 대한 기대성향

문항	질 의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학교규정으로 늘 단정한 학교모습이 유지되었으면 한다.					
2	질서가 갖춰진 학교만이 모든 면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3	학교규정을 잘 익혀두어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4	학교규정이 시대변화에 따라 개정 또는 일부 수정되었으면 한다.					
5	현재의 복잡한 규정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인지교육을 했으면 한다.					
6	입학 시 규정인지교육은 학교의 의무라고 생각되어 실시했으면 한다 .					
7	학교규정이 수칙·현장처럼 특정장소에 지속적으로 게시되었으면 한다.					
8	지속적인 학교규정의 적용보다는 정기적인 규정적용이 되었으면 한다.					
9	나는 학교규정이 정확히 적용돼서 선의의 학생이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					
10	학교규정이 단체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규범이기에 모두가 지켰으면 한다.					

Ⅲ. 인적 사항

다음은 귀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 응답자 사항 >

- | | | | | |
|----------|-------------|-----|--------------|-----|
| 1. 성 별 | ① 남 | () | ② 여 | () |
| 2. 학 교 | ① 인문계고 | () | ② 전문계고 | () |
| 3. 학교소재지 | ① 제주시 | () | ② 서귀포시 | () |
| | ③ 제주시 읍·면지역 | () | ④ 서귀포시 읍·면지역 | () |
| 4. 주 거 지 | ① 제주시 | () | ② 서귀포시 | () |
| | ③ 제주시 읍·면지역 | () | ④ 서귀포시 읍·면지역 | ()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사)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학교규정 인지교육을 통한 생활적응력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를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설문지의 문항들은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일 뿐 옳고 그르거나 좋고 나쁜 것이 없이 평소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것이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본 연구와 후속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됨은 물론 학생들의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연구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연구자 : 권혁진(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

* 문의처 : TEL. 064-742-9328, H·P 010-7270-9328 *

아래 문항들은 일상에서 드러나는 귀하의 성향이나 인식, 상황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보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다섯 가지(5간척도)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대답을 하나 골라서 √표 하여 주십시오.

I. 일상에서의 자기 성향

문항	질 의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규칙을 중요시 여긴다.					
2	내가 모범적이지 못하면 타인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3	여러 가지 상황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4	학생들이 혼화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5	타인의 실수는 인정하되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다고 느낀다.					

II. 학교규정에 대한 인식

문항	질 의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학교규정이 필요한 걸 알고 있지만 실행이 쉽지 않다.					
3	학교규정이 너무나 번잡할 것 같아서 교육하지 않는다.					
4	학교규정 전반에 대한 인지교육을 실시해 본 적이 있다.					
5	학교규정의 중요성을 알지만 때로는 무시하고 지나친다.					
6	학교규정을 일정기간 동안 지정장소에 게시한 적이 있다.					
7	학교규정에 의해 학교가 조직화·체계화되는 일은 중요하다.					
8	학교규정 때문에 학생들이 그릇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본다.					
9	학교규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본다.					
10	학교규정이라도 있어서 학교의 위계질서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교사 인터뷰 자료

* 면담학교명 : ▽▽고등학교

* 면담대상자 : 00 선생님(생활지도 담당)

* 면담일시 및 장소 : 2010. 04. 13. 17:30. 00학교 내 컴퓨터

* 면담내용

1.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의 생활면은 어떤가요?

한 마디로 힘들죠. 교사 학생 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이 요즘은 너무 발랄한 건지 예의가 없는 건지..., 일단 할 얘기가 있으면 의사표현은 다 하자고 들어요. 그제 말이 돼든 말든 들이대는 것 같기도 하고..., 반면에 다소곳하고 상냥한 태도의 귀염성이 있는 예의바른 녀석도 있어요. 문제는 그런 애들이 숫자가 드물 정도로 적다는 거지요. 제가 학생 땀 선생님만 봐도 의례히 주위를 살피거나 눈치를 보면 멧쩍어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만큼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어렵고, 남을 수없는 산과도 같았죠. 한편으론 존경스럽기도 했지만 주위에서 그 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찾기가 쉽지 않았죠.

2.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직경력이 짧은 저로서는 이 문제에 고민중입니다만..., 요즘, 학생들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규정을 들이래자니 아이들이 안 되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때론 화가 날 때가 간혹 있죠. 그럴 땐 규정이라는 칼을 뽑아들지만 사실 엄포용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면 왜 내가 그 때 규정적용을 엄정히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한 적도 있어요.

학교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땐 '교직이 생각보단 편치 않구나' 라는 생각에 회의를 느낀 적도 여러 번이죠. 정말 뭔가 새롭고 획기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요.

3. 그렇다면 학생생활규정을 강화시키거나 제대로 갖추면 될 것 아닌가요?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아이들보다 선생님들도 많이 변했다는 것이죠. 몇 년 전이던가 중간에 '패러다임' 이니, '개혁' 이니 정부가 주도하던 시절이 특히 그래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선봉에서 주도하지만 어느 순간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리죠. 그 때부터 길을 잃고 찾아 헤매는 건 우리들 몫이 되고요.

그러다가 길을 찾을 만하면 또 누군가가 길을 잘못 찾았다고 안개 속으로 이끌고 들어가지요. 이러니 누가 의욕이 있어 길을 찾으러 노력하겠어요. 의욕이 많을 뿐이죠. 이럴 땐 누군가가 흑기사처럼 나타나 멋진 세상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고요. 법만 제대로 지켜도 덜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학교에서도 생활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죠. 제대로 지킨다면 학교가 지금 보단 훨씬 달라지겠죠.

* 면담학교명 : △△고등학교

* 면담대상자 : 00 선생님(생활지도 담당)

* 면담일시 및 장소 : 2010. 04. 23. 18:30. 00로터리 합동생활지도구역 순회 중

* 면담내용

1. 학교에서 학생들이 생활규정을 잘 지키는가요?

어느 날 학교에서 교실복도를 지나는데 학생 중 한 녀석이 두발이 엉망이라서 특별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싶어 교무실로 데려와서 두발규정을 들이켰죠. 그리고 지정 일까지 두발을 단정히 하고 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죠. 그러고는 바쁜 일정 때문에 2~3일의 시간이 후딱 흘러버린 어느 날 그 학생의 담임교사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00가 요즘 학교를 나오질 않네요.”, “그래요? 뭘 때문이죠?” 반문하자 담임이 “실은, 선생님이 지도가 엄격하신 것 때문에...”, “뭐라고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단지 두발규정과 함께 검사항목만 제시했을 뿐인데... 멍한 하루였죠. ‘이 녀석을 찾아 가정방문을 할까? 아니야!, 언젠가 나오겠지’ 하고선 학부모와 전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통화했더니 어머니께서 “애가 겁이 많아서 그래요. 선생님께서 배려를 좀 해주신다면 보낼게요” 라며 다음날은 그 학생이 등교를 했더라고요. 두발은 대충 손질한 듯 했지만 여전히 ‘지저분한 헤어스타일’ 화가 나기도 했지만 자제하면서 차분히 대화로 접근했더니 “선생님만 제게 뭐라 그러세요? 댄 선생님은 뭐라 않으신데...” 라는 것이었죠. 규정이고 뭐고 없으셨죠.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선생님께 기껏 하는 소리가 자기합리화와 변명이었죠.

2. 그럼, 지금은 규정위반학생을 어떻게 지도하시는데요.

원칙대로 합니다. 규정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지요. 어차피 학생들에게 비춰진 제 모습이 어찌면 친절하거나 아니면 만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교사마다 학생들을 다룰 때 인위적인 의도도 있지만, 각자 선생님의 성격이 무의식 중 반영되지요. 저는 완벽함이 몸에 배어있는지 규정이 체질에 맞거든요. 그래서 규정에 따라 지도하는 것이 애들에게도 공평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렇다고 융통성이 없는 건 아닌데요. 적어도 고등학생이라면 말귀를 알아들을 거라는 생각과 학생들에게 신뢰를 가지고 얘기로 풀면 공감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화를 합니다만 역시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작심삼일(作心三日)이던데요. 그런 대화기법에 기대보다는 회의적일 때가 많지요. 요즘 고교생들 참 기가 막히죠.

3. 그러면, 앞으로 선생님 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은 어떠하리라 생각되세요?

다시 물어보셔도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말을 들어주는 교사의 열린 사고도 중요하죠. 그래야 신뢰형성이 된다고 보고요. 인간은 누구나 어쩔 수 없이 자기 생각과 기준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선입견이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면 학생, 교사 간에도 대립과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것은 각자의 의견에만 치중해서 의견제시를 하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학생들과의 직접 부딪힘이 경험적 터득이자 올바른 지도의 첩경이 되겠죠. 좀 더 생활지도 교사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제 자신도 노력하겠지만요. 그래도 우선 시 될 것은 서로의 감정보다는 어떤 원칙, 즉 규정이 중요하죠. 서로의 합의로 이뤄진 약속이자 집단의 목표를 명확히 해주는 기준이 되니까요.

그런 가운데 융통성이 있는 거죠. 규정은 처음엔 낯설고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까워서 꼭 필요한 조건이 되어 생활적응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

* 면담학교명 : ▲▲ 고등학교

* 면담대상자 : ○○ 선생님(생활지도 담당)

* 면담일시 및 장소 : 2010. 04. 30. 18:40. 00시청 정문 앞 쉼터

* 면담내용

1. 선생님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 이행과 관련된 지도 중 특이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어느 날 교문 앞을 지날 때였는데 단정한 교복을 갖춰 입은 아이들이 해맑게 인사를 하더군요. “그래~!” 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인사를 받고 지나쳤거든요. 그런데 수업에 들어가 보니 애들의 복장이 눈에 들어오는데 알록달록 교실 안이 가관이더군요. ‘왜 이러지?’ 하는 생각과 동시에 ‘복장이 이게 뭐야’, ‘내 수업시간이 이렇게 허술했던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야, 임마! 복장이 엉망인 녀석들 다 일어나!” 하고 순간 목소리가 높아지더군요. -누가 생활지도 담당이 아니랄까봐(?) - ‘정말이지 앞으로 내 앞에선 이런 건 용납 못해’ 하는 심정의 강렬한 포스(force)를 심어주고 싶었죠. 그 날 말로만 혼내고 마무리 했지만요.

그런데 다fms 학습에도 가 봤더니 똑같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오기(?)로 밀고 나갔지만 얼마 없어 제 스스로가 꼬리를 내려야만 했지요. 우연히 아이들 앞을 지나치다 들리는 소리가 교복은 ‘그저, 교문통과용’ 이라더군요. ‘우리 애들이 이런 수준이라니’ 씩씩한 생각이 들어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았죠.

2. 그렇다고 규정을 그저 없는 것처럼 적용도 않고 덮어버릴 순 없지 않나요?

“규정, 좋죠!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죠”. 우리 학교에서는 몇몇 생각 있는 교사들 말고는 ‘규정, 그런 것이 존재하겠지’ 하고 존재유무를 가릴 뿐, 규정의 내용은 전혀 살펴보지도 않는 경우가 다수죠. 그러니 생활지도 몇몇 교사에게만 해당되고 적용되는 딴 세상의 계율일 뿐입니다.

정말 규정을 살리려들자면 학교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죠. 규정이 잘만 지켜지면 예전의 활기찬 학교가 부활될 수도 있는데….

3. 혹시 학교규정을 인지차원에서 교육한 적이 있나요? 그게 학교에 어떤 영향을 주까요?

간혹 인지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꾸준하진 못해요. 아이들에겐 관심 없는 과목(?)이죠, ㅎㅎ. ‘시 어머니 잔소리’ 라고나 할까요? 애들이 뭐가 듣기에 좋겠어요. 바로 눈앞에서 ‘모든 게 안 된다.’ 고만 애길 해대니 짜증이 나겠지요. 그 이유는 뻔해요. 한꺼번에 규정에 관한 많은 걸 지루할 정도로 쏟아내니 그럴 만도 하지요. 그래서 저는 인지교육을 조금씩 여러 차례 나눠 해보니 효과가 있더군요. 결국 하다가 제가 바빠서 다 못했지만... 잘만 이어갔으면 지금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텐데 말이죠.

* 면담학교명 : ▽▽고등학교

* 면담대상자 : 00선생님(생활지도 담당)

* 면담일시 및 장소 : 2010. 05. 26. 18:00. 00학교 교사휴게실

* 면담내용

1. 학생규정인지교육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이한 발상이군요. 그저 학생규정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얘길 듣고 보니 충분한 가능성이 있군요. 그걸 교육해야 될 분야라곤 생각을 전혀 안 해봤거든요. 규정인 지가 제대로 된다면 그 기대효과는 대단할 것 같은데요. 실제 위반사항에 대해서 규정적 용보다는 슬쩍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규정을 적용하면 작성할 서류가 복잡해지죠. 과연 그 누가 한가해서 그러려고 나서겠어요. 하지만 처음에 시행이 어렵지 파급, 확산되고 나면 규정이 엄정하다는 것을 깨닫고 위반하려는 생각이 사라지겠지요. 결국 누군가 조금의 자기희생이 뒤따르더라도 시작만 할 수 있다면, 그 호응은 자연적으로 확산되리라 생각되고요. 꾸준히 한다면 멋진 학교로 재탄생할 것 같은 성공예감이 드는 데요.

2. 생활지도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역량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생활지도교사의 자질은 우선, 아이들에 대한 포용력이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매년 아이들의 분위기와 성향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지도했던 애들만을 생각해서 그때와 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이해하려하거나 대하려고 하면 아이 들하고의 거리가 멀어지죠.

가장 중요한 역량은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과 교사가 서로 믿음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야 애들도 우리 선생님 하면서 다가서고, 나도 우리 애들을 이해하고. 애 들이 나를 받아들이길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포용적인 마음으로 열면 아이들과의 믿 음이 생기게 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교사도 술선수법적 생활로 매사에 원칙을 지키고 규정을 위배해서는 안 되겠지요.

3. 학생들을 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주 무서운 스타일의 지도입니다. 강한 카리스마로 학생들을 압도하는 것이지 요. 처음엔 반발하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론 학업에 충실하게 되고 행동도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는, 엄격한 스타일의 지도입니다. 비록 강하진 않지만 기본에 충실하 면서도 기준을 정해서 공평하고도 일관성 있게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죠. 이것 역시 처 음은 지도이기에 반발이 예상되지만, 해서 될 것과 안 될 것, 요구할 것과 줄 것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에 대한 가치 판단이 나뉘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바 람직한 교사와 학생관계는 엄격한 선생님의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생 규정

000고등학교

차 례

1. 생활 규정	1
제 1장 총 칙	1
제 2장 학생 생활	1
제 3장 학생회	4
제 4장 선 도 (징계)	7
제 5장 개정 방법	9
2. 학생포상 규정	16
제 1장 총 칙	16
제 2장 포상위원회	16
제 3장 포상 유형	16
제 4장 규정의 개정 및 기타 규정	17
3. 학비감면자 · 대외장학생 선정 규정	20
4. 대학입학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발위원회 운영 규정	23
5. 학생 전입학 규정	30
6. 현장체험학습 실시 규정	33
7. 귀국학생 편입학 업무처리 규정	40
8. 귀국학생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위원회	49
8.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시행 규정	52

1. 생활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규정은 '000고등학교 생활규정' 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 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 규칙 기재 사항과 관련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장 학생 생활

제1절 교내(외) 생활

제 4 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5 조 (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6 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 7 조 (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 8 조 (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 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 학생의 보호자
2. 우리학교 전교사 또는 학교전화 : (739) 6601~6606
3.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 www.jje.go.kr, 열린 신고방
4. 도교육청 학교 폭력 핫라인 : (747) 3893 (부교육감 전용 전화) (710) 0218
5. 학생 고충 신고 상담 전화 1588-7179
6. 대검찰청 학교 폭력 신고 전화 1588-2828
7. 경찰청 범죄 신고 112 등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폭력 피해 학생 중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 상담교사에게 전학 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폭력 가해 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 제 9 조 (**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 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남녀 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 10 조 (**동아리활동**) 특가·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가·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11 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한다.
-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 제 12 조 (**용의복장**) 용의 복장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과 같다.
- 제 13 조 (**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주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급 환경 정돈, 출결 사항 점검, 학급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② 청소 구역의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 ③ 학급 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 한다.
 - ④ 소정의 등교시간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 정돈을 한다.
- 제 14 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② 실외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제 15 조 (**출결상황관리**) 수업일수, 결석, 지각·조퇴·결과 등의 출결상황은 본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 규정' 에 나와 있는 '출결상황 관리' 에 따른다.
- 제 16 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금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제 17 조 (**교외생활 지도**) 학교는 학부모,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제2절 정보통신

제 18 조 (**사이버 생활**) 학생들은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 19 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③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3장 학생회

제 20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구성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제 21 조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2 조 (**금지활동**) 본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학교 행정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제 23 조 (**지원기구**) 본회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생지원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 24 조 (**기능**) ① 본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능력 배양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교풍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의 봉사활동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 활동
 6.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 ② 본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뤄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지원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의 활동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학생지원위원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 25 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 ② 부회장 2인(제1부회장, 제2부회장)
- ③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 각 1인
- ④ 각 부서의 부장은 필요에 따라 부원을 둘 수 있다. (단, 선도부원은 회장과 부회장, 생활부장의 인선에 의하여 지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 26 조 (부서) 본회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 ① 총무부 : 본회의 사업계획, 회의기록 및 필요한 사무
 - ② 학예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 ③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 ④ 선도부 : 학내 질서 및 교풍확립과 학교정화에 관한 사항
 - ⑤ 봉사부 : 불우 이웃 돕기 및 학교 주변 정화
- (단, 학생회장은 필요시 특별 부서를 요청하면 학생지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부서를 둘 수 있다.)

제 27 조 (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임원회 의장으로 이를 통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 부장은 소속 부서의 업무를 통괄한다.

제 28 조 (임원자격 및 선출) ① 회장, 부회장은 전 회원이 참여하는 직접·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학생지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 ② 정·부회장의 입후보는 개별입후보제로 한다.
- ③ 회장·부회장의 선출은 회원 과반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로 한다.
(단, 단독 입후보자는 찬반투표 실시 후 재적학생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의 과반수를 득표하여야 하며, 낙선한 경우라도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 ④ 입후보자는 등록신청서 1부, 추천인명부 1부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회장·부회장 입후보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재학생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단, 복수 추천은 안 됨.
 2. 성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무단결석이 없는 자)
 3. 통솔력이 있는 자
 4. 제2학년에 재학 중인 자(단, 제2부회장은 제1학년에 재학중인 자)
 5.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⑥ 각 부장과 차장은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의 승인절차를 거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⑦ 각 부장은 2학년에서 추천하고, 차장은 1학년에서 추천한다.

제 29 조 (재선거 규정) 다음과 같은 경우 재선거를 한다.

① 최초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

② 단독 후보자가 찬반투표에서 탈락했을 경우

제 30 조 (선거 관리) ① 본회의 회장, 부회장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 위원회를 두며 1인의 위원장과 10~15인의 위원을 둔다. 단, 투표관리를 위해 각 학급에 3명의 투표관리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학생회장이 되며 위원은 부회장, 각 부장 및 2학년 학급실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선거관리를 통괄하고 위원은 투표, 개표 등의 선거관리 업무를 맡는다.

④ 학급 투표관리위원은 실장, 부실장, 총무로 한다.

⑤ 위원장은 투표일 7일 전에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입후보자는 투표일 3일 전까지 (17:00까지) 입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⑥ 입후보자의 합동 소견 발표회는 투표 당일에 실시한다.

⑦ 단독 입후보자가 찬반투표에서 탈락할 경우 위원장은 최초 선거와 동일한 방법(과정)을 적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 31 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 2학기에서 다음 해 1학기말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회장이 결원된 경우에는 부회장, 총무 순으로 그 직을 승계한다.)

제 32 조 (대의원회 구성) 본 회의 대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부의 부장·차장 및 각 학급회장·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 33 조 (대의원회 기능) 본 회의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회 사업 계획의 심의 및 집행 결과 보고의 승인

② 기타 학생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③ 회칙의 개정에 따른 심의

제 34 조 (대의원회 회의) ①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 학기 초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학생지원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④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안에 따라 의결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⑤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1일 전에 학생지도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5 조 (학생지원위원회 구성) 본 회의 학생지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지원위원회는 전교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부서 지원위원을 1인 이상 임명할 수 있다.

제 36 조 (**학생지원위원회 기능**) 본 회의 학생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지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지도한다.
 1. 학생회의 지도 조안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 지도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생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전항의 지도는 사전·사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제 4장 선 도 (징계)

제 37 조 (**선도원칙**) 학생의 선도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 ① 학생의 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② 학생 징계는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 38 조 (**선도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 ① 학생들의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 선도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교감, 학생부장, 교무부장, 윤리(사회)부장, 진로상담부장, 해당 학년부장 및 담임교사, 생활지도 담당교사로 한다.
- ③ 교감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운영전반을 총괄하며 학생부장은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고, 회의록은 생활지도 교사가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다.
- ④ 본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 39 조 (**기능**) 본 위원회는 학생 징계 사안(특별교육 이수 이상)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다만, 사회봉사 이하는 학생과에서 자제 협의로 기안하여 학교장의 결심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 40 조 (**사안설명**) 본 위원회는 심의 전에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시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 41 조 (**학교장 재심 부의**)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2 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② 사회봉사 : 학교장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회봉사 기관에서 3~7일 기간으로 한다.
- ③ 특별교육 이수 : 교육감이 지정하는 특별교육기관에서 10일 이내의 교육이수를 한다.
- ④ 퇴학처분 : 퇴학 처분의 징계를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학부모나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훈련교육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 43 조 (**방법**)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①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생·진로상담부,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담임교사의 책임 지도하에 학교 내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 ②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 기관에 위탁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된다.

- ③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특별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한다.
 - ④ 학교장은 징계 및 퇴학 처분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단, 가정학습기간은 출석처리)
 - ⑤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은 봉사 또는 교육이수 확인서를 학생과에 제출한다. 다만, 미제출시는 사고 결석으로 처리하며 가중 처벌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징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한다.(다만, 이 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
 - ⑦ 주무부서는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선도한다.
 - 1. 반성문 쓰기
 - 2. 징계 처분에 따른 활동 후 소감문 쓰기
 - 3. 교과 관련 특별 과제 부여
 - 4. 개별 상담 지도
 - 5. 독서 지도
- 제 44 조 (**절차**) ① 학교 내의 봉사 이하에 해당되는 징계 사안에 대하여 학생의 진술과 담임교사의 의견 및 담당교사의 진상조사를 토대로 주무부서(학생부) 회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 ②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는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단,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직원회의에 회부, 심의할 수 있다.)
 - ③ 주무교사는 징계내용을 징계대장에 기재한다.
 - ④ 주무교사는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 제 45 조 (**징계 경감 및 기간 조정**) 학교장은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선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의 경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① 징계의 경감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학생부장교사가 진로상담교사 및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해제한다.
- 제 46 조 (**징계 해제 및 추수지도**) ① 징계 해제 학생은 생활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 해제 전에 학생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해제된 학생에게 담임교사 및 그 외 교사를 지정하여 개별지도를 하도록 한다.
- 제 47 조 (**자격제한 및 상실**) 사회봉사 이상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포상, 장학생 및 학생회 임원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상실한다.
- ① 포상 : 사회봉사 처분이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학년도의 각종 수상에서 제외된다.
 - ② 장학생 : 사회봉사 처분 이상을 받은 자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당해 학년도에는 장학생으로 추천될 수 없으며 징계 당시의 장학생은 다음 분기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③ 학생회 임원 : 사회봉사 처분 이상을 받은 자는 당해 학년도에 학생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으며 징계와 동시에 임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제 48 조 (**기준**) 징계 기준은 [별표2] 와 같다.

제 5장 개정 방법

제 49 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① 본 ‘학교생활규정’ 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학교생활규정’ 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학교생활규정” 중 “제4장 체벌” 을 삭제하고 2007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학생회 회칙’ , ‘학생선도규정’ , ‘학생체벌규정’ 은 이를 폐지한다.

제 3 조 (폐지규정 부칙)

① 학생회 회칙 부칙

- (시행일) 이 회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다.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 이 회칙 1차 개정안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 2차 개정안은 198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 3차 개정안은 1996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 4차 개정안은 199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 5차 개정안은 199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 6차 개정안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생체벌규정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 (규정의 제개정) 이 규정의 제개정은 체벌규정위원회(교원대표, 학부모대표, 학생대표)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후, 학교운영위원회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체벌징계는 학생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상급생의 체벌 금지) 이 규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하급생을 지도하기 위하여 체벌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며, 만약 체벌로 인한 사안을 발생시켰을 경우 학생선도규정에 의해 처분한다.
- (학생체벌규정 삭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팀-971(2007. 3.27)에 의거, 체벌 규정 폐지 및 삭제 권고가 있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2007.4.26)에서 심의를 마치고, 학생, 학부모, 교사대상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이상 찬성이 있어 2007. 7.16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체벌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③ 학생선도규정 부칙

- 본 규정은 1985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교육법 제77조(징계등) 개정(1997.6.1)에 의해 일부개정 및 삭제(1997.6.1)
-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학생체벌규정 삭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팀-971(2007.3.27)에 의거, 체벌규정 폐지 및 삭제 권고가 있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2007.4.26)에서 심의를 마쳐 학생, 학부모, 교사대상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이상 찬성이 있어 2007. 7.16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체벌규정을 삭제한다.

[별표 1] 용의 복장에 관한 사항

용의복장에 관한 제반규정

1.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의 승인에 의해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2. 두발은 단정하게 하되, 파마, 염색, 탈색을 금지한다.
3.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4. 스타킹은 동복에만 사용하되 검정색만을 허용하고, 레깅스는 허용치 않는다.
5. 양말은 하복에만 사용하되 흰색만을 허용하고 발목 길이까지 오는 것을 착용한다.
6. 명찰은 교문에 들어서면서부터 패용, 교문을 나서며 제거한다.
 - 가. 재질 : 플라스틱 명찰(가로 6cm×세로 2cm)
 - 나. 형태(2004학년도 기준)

바탕색	글자색	학년	비고
초록색	흰 색	1	※ 1학년 때 구입한 플라스틱 명찰을 3년간 패용하며, 신입생은 3학년 졸업과 동시에 3학년에서 패용했던 명찰색깔을 사용한다.
노란색	검정색	2	
흰 색	검정색	3	

< 동·하복 규정 >

구분	내 용	
상의	동복	허리선과 힙선 중간정도의 길이에서 1인치 오차까지만 허용.
	하복	- 속이 비치지 않도록 속옷을 잘 챙겨서 입어야 하며, 상의 길이는 허리선과 힙선의 중간 정도의 길이를 허용. - 어깨 주름이 없어야 하고 스냅단추를 달며, 상의 끝이 V자로 벌어지지 않도록 폭을 좁게 할 것.
하의	동복	- 치마의 단이 무릎(슬골) 위로 올라가서는 안되며, 폭을 너무 좁게 하여 앞 주름을 잡는 것을 금지
	하복	- 무릎을 완전히 가리고 무릎 밑으로 내려와야 하며, 폭을 줄이거나 길이를 줄이는 것은 절대 금지(하의 각도가 180°)

< 동복 규정 >

구분	색 상	혼용율	모 양
상의	고동색	모:70%, 나일론:30%	테일러칼라, 더블 단추
조끼	진밤색	모:40%, 폴리에스텔:60%	브이라인, 앞단추 5개
하의	진밤색	"	A라인, 앞주름 4개
타이	갈 색	폴리에스텔:100%	
블라우스	흰 색	T/C 혼방	셔츠칼라, 셔츠소매

< 하복 규정 >

구분	색 상	혼용율	모 양
상의	바탕	흰 색	폴리에스텔:65%, 레이온:35%)
	칼라	회 색	폴리에스텔:65%, 레이온:35%)
	교표	연녹색	회색바탕(가로7cm×세로2cm)
	소매	회 색	소매 라인 2mm
하의	바탕	회 색	폴리에스텔:65%, 레이온:35%)
	주머니	회 색	주머니 시접선에 위치

[별표 2] 징계 기준

< 징계 기준 >

구분	항	구 분	징계 구분			
			교 내 봉 사	사 회 봉 사	특 별 교 육	퇴 학 처 분
1.예절	1	교사에 언행이 불손한 학생	○			
	2	성행이 불량하여 주인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3	학생답지 않는 용의 및 행동을 한 학생	○			
2.준법	4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5	공중도덕 및 기타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			
	6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7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3.수업	8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9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10	수업거부 또는 포기로 학업이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		○	○	○
	11	고사 중 부정행위, 방조한 학생(해당 과목은 0점 처리한다)	○	○		
	12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13	시험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4.출결	14	무단 결석, 결과, 조퇴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15	무단 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16	2주 이상 무단결석을 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	○	○	
	17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이 20일 이상인 학생		○	○	○
5.약물	18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	○		
	19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구분	항	구분	징계 구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퇴학 처분
6. 폭력	20	타인을 구타하거나 괴롭힌 학생	○	○	○	
	21	집단 괴롭힘을 모의했거나 선동, 가담한 학생	○	○	○	○
	22	교내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	○	○	
7. 퇴폐 행위	23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24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을 한 학생	○			
	25	음란물 (서적, 비디오 등) 자료를 소지, 탐독한 학생	○	○		
8. 금품	26	불건전한 이성교재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27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			
	28	부당하게 금품을 각출, 사취한 학생	○	○	○	○
9. 집단 행위	29	금품 및 남의 물건을 훔친 학생	○	○		
	30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31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케 한 학생		○	○	○
10. 사이버 통신	32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한 학생	○	○		
	33	인터넷을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으로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 을 유포 또는 침해한 학생	○	○	○	
	34	음란, 폭력성 유해사이트에 상습적으로 접근하여 공개하는 학생	○	○		
	35	타인의 ID(비밀번호)를 사용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학생	○	○	○	○
11. 보충 사항	36	사이버, 통신 예절을 지키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37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징계를 받거나 징계 중에도 개선의 정이 없을 때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38	징계 기준 외의 것은 선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2. 학생 포상 규정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8.2.24 대통령령 제15664호)와 000여자고등학교 학칙 제30조에 의하여 학생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원칙) 포상은 그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적시에 시행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인다.

제 2장 포상위원회

제 3 조 (구성 및 기능)

1. 포상위원회는 교장, 교감, 교무부장, 학생부장, 연구부장, 지역사회·윤리부장, 진로상담

- 부장, 해당학년부장 및 장학담당교사로 구성한다.
2. 교장이 포상위원회를 주관하고 위원회 운영 전반을 통할하며, 교무부장이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3. 본 위원회는 학생 포상에 관한 심의를 한다.
- 제 4 조 (심의) 본 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 제 5 조 (재심) 학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재심을 명할 수 있다.
- 제 6 조 (회의록) 본 위원회의 회의록은 담당부서 교사가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 3장 포상 유형

- 제 7 조 (포상의 종류 및 기준) ① 1학기말과 1·2학년 수료 및 3학년 졸업 시 수여하는 포상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우수상

학기별로 시상하되, 각 과목 석차백분율이 2% 이내인 자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적용한다.(단, 동순위자가 있을 시는 2%를 초과할 수 있으며, 2% 이내인 자가 없는 교과목인 경우에는 교과목 석차 1위인 자로 한다.)
 2. 공로상
 - 가. 학생회 운영에 있어서 교내외적으로 특별한 공로가 있는 학생에게 졸업 시에 수여한다.
 - 나. 체육기능이 뛰어나고, 학교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학생에게 졸업 시 수여한다.
 3. 봉사상 : 봉사정신이 뛰어나 남의 모범이 되며, 헌신적으로 봉사한 학생에게 졸업 시에 수여한다.
 4. 특기상 : 체육, 음악, 미술, 문예, 웅변, 컴퓨터 또는 그 외 분야에서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교내외적으로 활동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담당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졸업 시 수여한다.
 - 가.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학생
 - 나. 기능이 뛰어나며 교외 입상실적이 있어 지도교사의 추천을 받고 포상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된 학생
 5. 외부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는 상
 - 가.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청소년단체에서 정하거나 담당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수여한다.
 - 나. 학기 중에 수여하는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모범학생상 : 학교, 가정, 사회에서 인본 정신이 강하고 선행, 효행, 봉사, 예절 등 기타 모범된 사실이 현저한 학생에게 수시로 수여한다.
 - 2) 교내경연대회 우수상 : 과학수학 경시대회, 논술경시대회, 외국어경시대회, 문예백일장, 예·체능 경연대회 등 교내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에게 수시로 수여한다.
 6. 기타 학교장상 :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담임교사 및 담당교사의 추천을 받아 수여할 수 있다.

제 4장 규정의 개정 및 기타 규정

제 8 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교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 9 조 (**기타 규정**)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 사안의 처리는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 10 조 (**등재의 의무**) 담당 교사나 담임교사는 수상대장에 수상내용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5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제9조 제1항 개정 - 교육감상 폐지로 최우수상제 신설
- ② 제9조 제3항 개정 - 후반부 삭제
- ③ 제9조 제5항 개정 - 봉사활동 삭제
- ④ 제9조 제10항 개정 - 봉사상 신설(1989. 12. 30)

부 칙

제9조 개정(1990. 6. 6)

부 칙

명칭 및 일부 개정(1992. 5. 6)

부 칙

- ① 종합생활기록부 시행에 따른 개정
- ② 제9조 제1,2항 개정 - 최우수상 및 우등상제를 폐지하고 종합우수상, 학력우수상제 신설
- ③ 제16조 제1항 개정 - 포상제에 따른 개정
- ④ 제16조 제4항 삭제(1996. 5. 6)

부 칙

- ① 교육법 제77조(징계 등) 개정에 의해 일부개정 및 삭제(1997. 6. 1)
- ②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